

# 2023년 학교 안전관리 종합계획(포천노곡초등학교)



포 천 노 곡 초 등 학 교

**I. 개요** .....

- 1. 학교계획
- 2. 학교계획 추진현황
- 3. 학교 현황 및 조직체계
- 4. 안전 관련 업무

**II. 세부 추진 계획** .....

- 1. 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 2. 학교 안전교육의 내실화
- 3.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 조성
- 4. 학교 안전 문화 확산
- 5.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붙임]** .....

- 1. 학교시설 안전관리 업무 관련 점검표
- 2. 학교안전 자가점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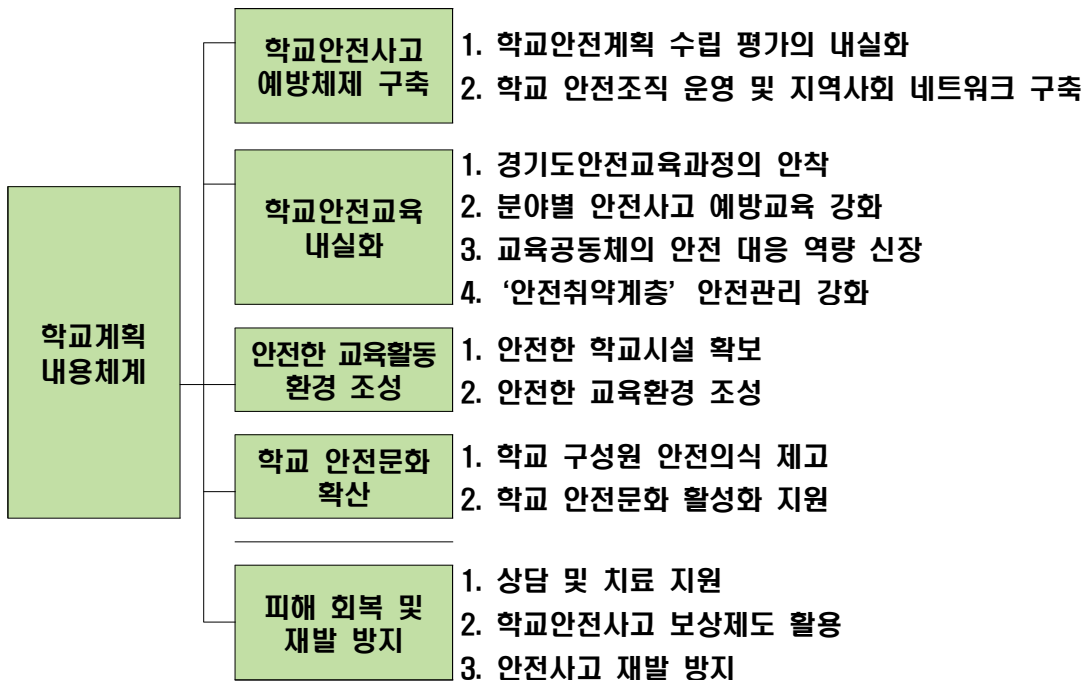
# I. 개요

## 1. 학교계획

### 가. 학교계획의 목표

- 실효성 있는 학교계획의 수립으로 학교 구성원의 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 자신의 안전과 타인과 동료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역량 배양
- 학교 안전 관리의 체계성(계획, 준비, 실행, 평가, 피드백) 확보

### 나. 학교계획의 내용체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 다. 학교계획의 수립.시행

-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제6항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및 시행

## 2. 학교계획 추진현황

### 가. 학교안전교육 추진 실적

#### 1) 교직원 안전교육 직무연수 이수 현황 (기준 : 2022년)

연도	구분	교직원 수(명)			안전관련 전문교육(15시간) 이수			
		교원	직원	계 (A)	교원	직원	계 (B)	이수율 (B / A)×100
2019.3. ~ 2022.2	2020							
	2021							
	2022							

※ 3년마다 모든 교직원이 안전교육 직무연수(15시간 이상) 이수

※ 교원은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시간제 강사를 말함

#### 2) 학생 및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 (기준 : 2022년)

교육대상 인원수(명)				교육실시 인원 수(명)				실사비율(%)	
학생 (A)	교직원 수			학생 (C)	교직원 수			학생 (C/A)	교직원 (D/B)
	교원	직원	소계 (B)		교원	직원	소계 (D)		

\*코로나 19로 인해 2021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미 실시

#### 3) 안전영역별·교육과정영역별 학생안전교육 이수시간 현황 (2022년 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생활안전교육 (17시간)	시설 및 제품이용 안전	시설안전
		제품안전
		실험실습안전
교통안전교육 (13시간)	신체활동 안전	체육 및 여가 활동 안전
		실종 및 유괴 예방
	보행자안전	교통 표지판구별하기
		길을 건너는 방법
		보행안전
	자전거안전	안전한 자전거 타기
		안전한 자전거 관리
	오토바이안전	오토바이 사고의 원인과 예방
오토바이 운전 중 주의 사항		
자동차 안전	자동차사고의 원인	
	자동차사고 예방법	

	대중교통안전	대중교통 이용 안전수칙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20시간)	학교폭력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신체 금품갈취 강요)
		심리 정서적 폭력
		사이버폭력
	성폭력	성폭력예방 및 대처방법
		성매매 예방
	자살	자살예방 및 대처방법
가정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약물 및 사이버중독예방 (9시간)	약물중독	마약류 피해 및 예방
		흡연 피해 및 예방
		음주피해 및 예방
		고카페인 식품 피해 및 예방
	사이버중독	인터넷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재난안전 (7시간)	화재	화재발생
		화재발생시 안전수칙
		소화기 사용 및 대처방법
	사회재난	폭발 및 붕괴의 원인과 대처방법
		각종 테러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자연재난	홍수 및 태풍 발생시대처요령
지진·대설·한파·낙뢰 발생시 대처요령		
직업안전 (2시간)	직업안전의식	직업안전 의식의 중요성
		직업안전 문화
	산업재해의 이해와 예방	산업재해의 의미와 발생
		산업재해의 예방과 대책
	직업병	직업병의 의미와 발생
		직업병의 예방과 대책
	직업안전의 예방 및 관리	산업재해 관리
정리정돈		
보호구 착용		
응급처치 (4시간)	응급처치의 이해와 중요성	응급처치의 목적과 일반원칙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응급처치 전 유의사항 및 준비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상황별 응급처치	기도폐쇄
지혈 및 상처처치		

## 나. 전년도 학교계획 추진실적

※ 해당칸에 ✓를 표시

기본계획 각호	법제도	세부점검내용	계획수립 <sup>1)</sup>		전년도 실적 <sup>2)</sup>			추진실적 세부내용 <sup>3)</sup>
			○	×	○	△	×	
1. 예방 정책 기 향 목표	기본 계획, 지역 계획, 학교 계획	학교계획 수립 시 안전담당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였는가?	✓		✓			· 등하교시 교통안전지도 · 스쿨존 내 안전시설 점검
		학교계획에서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교직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		✓			
		학교안전계획의 취지와 목표를 학교실정에 맞게 적절히 설정하였는가?	✓		✓			
		우리 학교는 학교와 주변지역의 위험성을 파악한 후, 이에 적합한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학교안전계획은 교직원들 간에 명확히 공유되었는가?	✓		✓			
		안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시간, 정보, 인원, 예산 등)과 수행 절차는 파악되었는가?	✓		✓			
2. 교육 활동 운영의 기본지침	학사일정별 학교안전	학사일정별 연간 안전관리계획 <별첨6>은 각 계절별 재난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		✓			· 매월 안전점검의 날에 훈련 중심의 대피훈련 실시 · 불시 훈련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및 대응능력 훈련
		체험과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계획하였는가?	✓		✓			
		안전학습 관련 콘텐츠는 적절하고 풍부하게 준비하였는가?	✓		✓			
		시기, 활동, 행사별로 발생하기 쉬운 사고나 취약 학생 혹은 구역을 파악하여 예방 조치를 할 계획을 세웠는가?	✓		✓			
	외부 체험 활동 안전	현장체험학습 계획 시 현장체험학습 지침 <별첨5>의 사항들을 교사들에게 공지하고, 계획에 게재하였는가?	✓		✓			· 교직원대상 심폐소생술 연수 실시
		학교 주변 안전관리	학교안전의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자치체, 소방서, 경찰서 등) 간 협력 계획이 마련되었는가?	✓		✓		
	스쿨존 정비 방법은 마련되었는가?		✓		✓			
안전약자 안전대책	요양호자(안전약자)를 파악하고, 안전약자 안전대책 <별첨3>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		✓				
3. 학교 안전 교육	예방 및 학교 안전 교육	안전교육 연간 계획표에서 학교와 학교 주변에 존재하는 위험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교육 계획에 포함시켰는가?	✓		✓			· 학교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안전 점검의 날' 운영(매월 4일)
		안전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배려도 교육에 포함 시켰는가?	✓		✓			
		학생 참여형 안전교육을 준비했는가?	✓		✓			
		안전교육 교사연수 연간계획은 준비 되었는가?	✓		✓			
		안전사고 유형별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교과 연계 방법이 수립되었는가?	✓		✓			
		안전 전문가 초빙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			
	정기훈련	학교구성원 모두 체험할 수 있는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기본계획 각호	법제도	세부점검내용	계획수립 <sup>1)</sup>		전년도 실적 <sup>2)</sup>			추진실적 세부내용 <sup>3)</sup>
			○	×	○	△	×	
		훈련은 구체적 목표 및 평가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		✓			
		훈련은 체험형·토의형으로 수립하였는가?	✓		✓			
		학교에서 일어날 위험이 높은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재난대비훈련을 계획했는가?	✓		✓			
		심폐소생술의 이론과 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			
		안전약자를 포함한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4. 학교시설 안전 점검·관리 및 안전조치	매월 안전 점검의 날 (제6조)	매월 안전점검의 날 <별첨10>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학교생활 속에 스며드는 안전 문화 조성
	안전관리(제7조)실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별첨11>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계획·실시하였는가?	✓		✓			
	CCTV 관리	CCTV 관리 업무 분장은 명확한가?	✓		✓			
5. 학교 안전 문화 확산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기록하고 자료를 기록해서 공유하며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각종 안전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공유·적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자료는 정기적으로 갱신, 정비하여 손쉽게 찾아 쓸 수 있게 준비하였는가?	✓		✓			
		학교 구성원의 안전 관련 행동, 실천, 태도 등에 대해 인정과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학교 풍토가 조성되어 있는가?	✓		✓			
		학교안전은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확보될 수 있다는 가치관 확산을 위한 홍보·협업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안전관리활동에 따른 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방안을 마련했는가?	✓		✓			
		학교구성원이 학교안전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했을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		✓			
6. 기타 사항		재난과 학교안전사고의 보고와 보상에 관한 절차와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마련해 놓았는가?	✓		✓			

주) 1. 계획 수립 : ○ - 반영, × - 미반영

2. 전년도 실적 : ○ - 잘 추진했음, △ - 보통이다. × - 보통이하로 추진

3. 기본계획 각 호별로 전년도 해당학교의 주요 학교안전 추진 실적을 기재

### 3. 학교 현황 및 조직체계

#### 가. 학교 현황

##### 1) 일반현황

학교명	포천노곡초등학교		설립 구분	공립		
주 소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성장로869번길 4					
	※ 그린스마트 사업으로 인해 2023.3.1.~2024.2.29. 동안은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호국로 3054'에서 교육 활동이 실시됨.					
전 화	031)535-0551	FAX		홈페이지	www.happynogok.es.kr	
교 장	학교안전책임관					

##### 2) 학생 및 교직원 현황(2023년 3월 기준)

학생 (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합계

교직원 (명)	교원	행정직원	급식업무직원	돌봄전담사	기타	합계

##### 3) 학교 비상연락망

### 교직원 비상연락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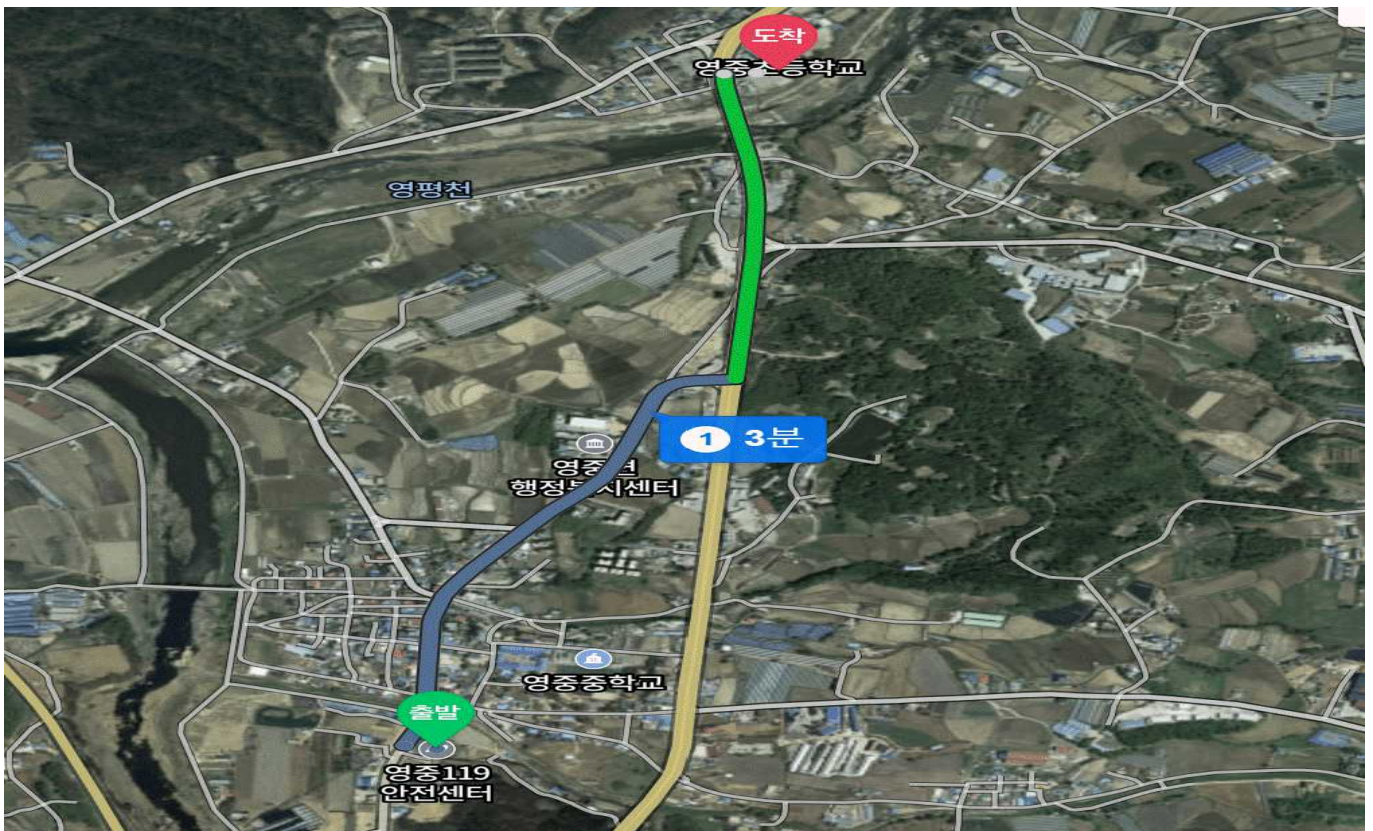


#### 4) 학교 안전현황 및 비상대피도

##### ○ 학교 위치



##### ○ 소방차 진입 경로



○ 학교안전 현황 분석

【 강 점 】	【 약 점 】
- 소도시 면 지역으로 주변에 유해시설 없음 - 전교생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므로 비교적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고, 출입문이 3군데(좌,우,가운데)여서 비상사태 시 빠른 대피가 가능함.	-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멀어 도보로 통학하기 어렵고 통학버스로 등하교 해야함. - 큰 도로가 학교와 인접해있어 교통량이 많아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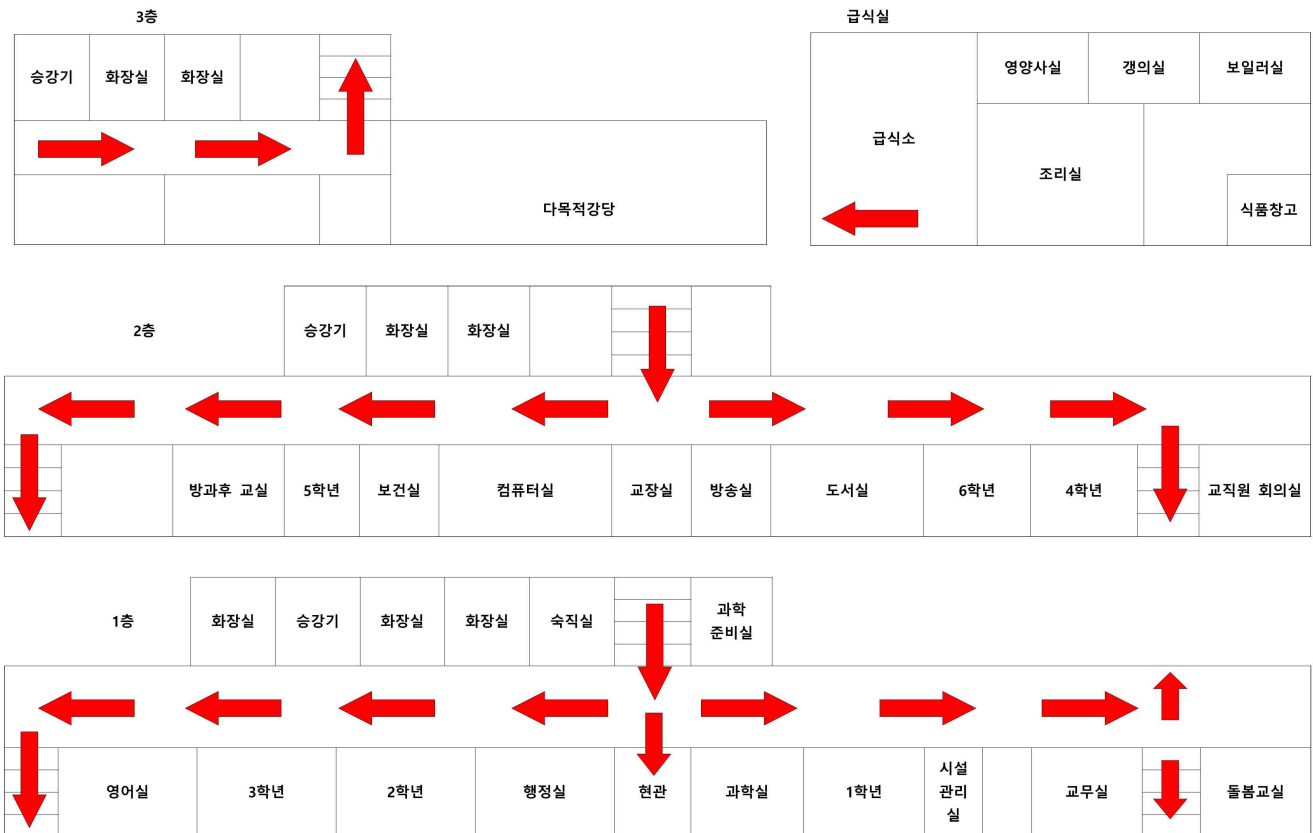
○ 학생보호인력 운영현황

연도	운영 현황			활동 장소	활동 내용
	오전(명)	오후(명)	계		
	외부모집	외부모집			
2021	1	1	2	학교 앞 횡단보도 학교 교내	학생 등하교 지도, 교통안전 지도, 교내 인 및 안내
2022	1	1	2	학교 앞 횡단보도 학교 교내	학생 등하교 지도, 교통안전 지도, 교내 인 및 안내
2023	0	1	1	학교 앞 횡단보도 학교 교내	학생 등하교 지도, 교통안전 지도, 교내 인 및 안내

○ 비상대피 안내도

《포천노곡초등학교 비상대피도》

2023.2.28.



## 나. 학교 안전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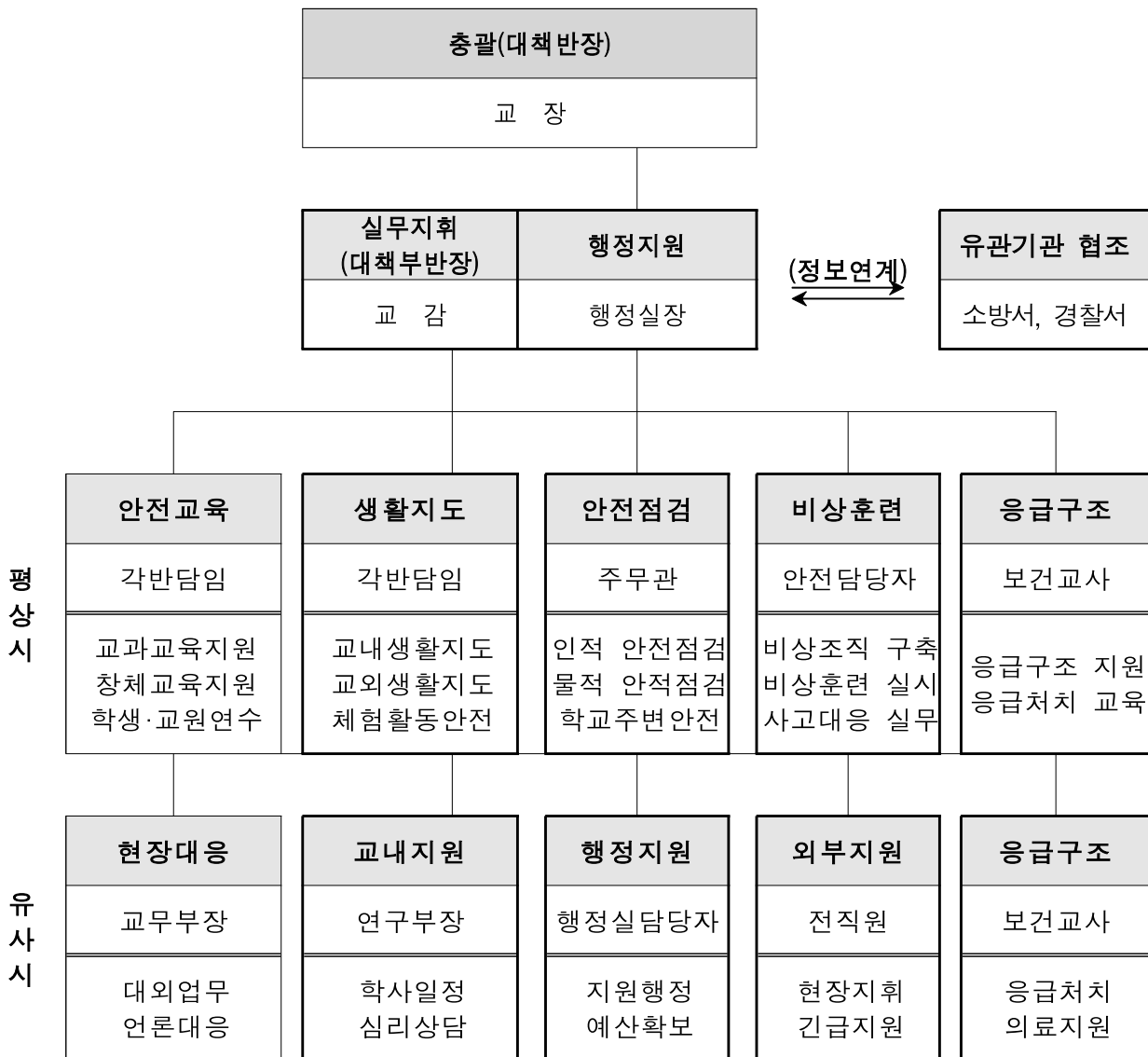
### 1) 안전관리추진 조직

#### □ 평상시

- 평상시의 안전관리체계는 학교안전업무 구성요소인 안전교육, 생활지도, 안전점검, 비상훈련, 응급구조 등으로 업무를 세분화시켜 조직을 구성하거나, 학교의 부장 직제에 따라 안전 업무를 분담하여 조직 구성 가능

#### □ 유사시

- 재난 또는 사고를 대비한 유사시 안전관리체계는 평상시의 안전관리체계와 연속성을 지니되,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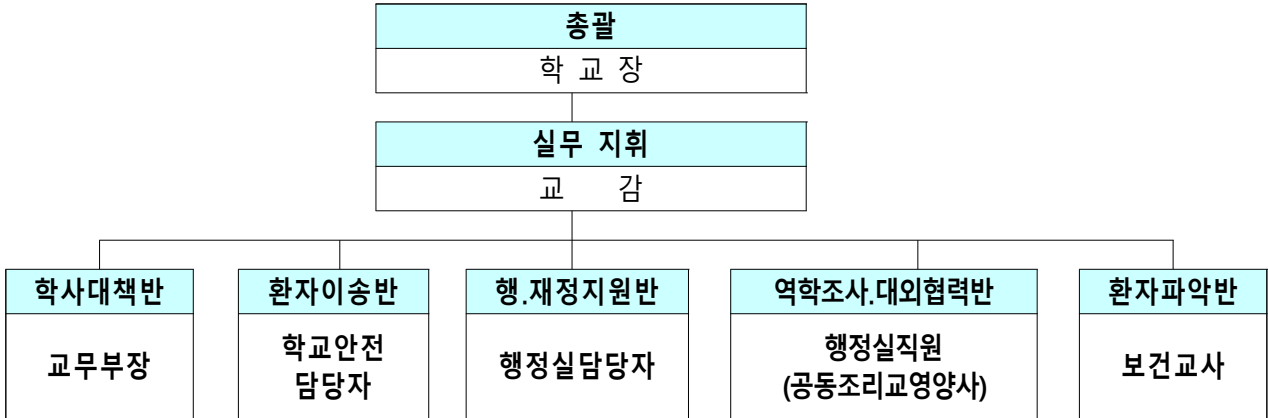


○ 세부 역할

직 책		임 무	비고
최 초 발견자		-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육하원칙, 행정안전부 상황전파시스템 가동) - 사고현장 보존(사진 및 동영상, 가림막 설치 등)	
대책 반장	학교장	- 사고대책반 소집 및 회의주재 - 사안논의 및 사고처리안 결정 → 해결방안 지시 -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사고 통지 및 협조 요청 - 사안처리에 대한 보호자 불신해소 대책 강구	
대책 부반장	교감	- 학교장 부재 시 업무 대리 (현장사고 대책 총괄) - 상황실 운영(전용 전화번호 및 기록자 2인 지정) - 반 구성 및 역할 배정 - 정보 종합 및 분석(언론 일원화 : 언론, 학부모, 시민단체 등) - 반별 사안 처리 진행상황 확인(체크리스트 검토) - 유관기관 협조 의뢰 - 보호자에 대한 대응 및 요구사항 논의(대책부반장 및 반장)	
현장 대응반 (응급구조반)	교무부장 보건교사	- 현장대응반장(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 교감 부재 시 업무대리(현장사고 대책 총괄) - 학년 피해 상황 종합 - 사안 관련 학부모 응대 및 의견수렴 - 학년 관리(학생 동요 및 추가 사고 방지 대책 수립) - 사고현장 이동 및 상황파악, 정보수집, 시간대별 상황 보고 - 최초 사안 조사 및 사안보고서 작성 - 피해상황 종합 - 피해학생 후송병원별 학생인원 파악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장대응반 일지 작성) - 사안관련 학생 정보제공(상담기록, 교우관계 등) - 보호자 연락 - 학급 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교실 정상화 노력 - 응급조치 및 의료자문 -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처리(피해 학생 및 교직원 등 보상)	
교내 지원반	연구부장	- 교내지원반장(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 학생 현황 파악 - 직원회의 개최, 비상연락(전직원, 학부모) - 피해학생 및 가족 지원 - 학사일정 검토 - 관련 문서 작성 - 상황실 전화응대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황판 및 체크리스트, 일지 작성) - 사안 관련 학급 및 현장목격자 등 상담 필요 학생 상담지원 (필요 시 외부지원 자문 및 지원 요청)	
행정 지원반	행정실장	- 학생 귀교 대책(이동수단 확보)수립 - 현장이동 지원 및 인적·물적 지원 - 물적 피해 현황 파악 - 추가 사고 위험 여부 확인 - 교육연구시설공제 업무 처리(재산 및 시설) - 행·재정 지원	
외부 지원	협력지원단체	- 전문 외부기관 고유 역할 진행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부모회장	- 사안 처리에 대한 학교 협조(유연비어 확산 방지) - 사안 관련 학부모 중재 - 학부모 봉사단 조직 및 운영	

## 2) 학교식중독 교내대책반의 구성.운영

- 대책반의 주요 임무는 학교식중독 발생 시 학사대책, 환자이송, 행.재정지원, 역학조사.대외협력, 환자파악으로 구분



- 식중독 발생시 대응 절차

구 분	수행 사항	관련 담당
<b>&lt;1단계&gt; 발생인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석생 사유 파악 및 보건실 방문 학생 관찰 후 교내 보고</li> <li>○ 학교(원)장 주재 대책협의를 통해 신고 여부 등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책협의 : 관리자,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 참석</li> <li>- 유증상자 현황 파악, 신고 여부 등 결정</li> <li>※ 보건소에 단순 문의 주의(신고로 오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담임교사) → 보건교사 → 학교(원)장</li> <li>▶ 학교(유치원)</li> </ul>
<b>&lt;2단계&gt; 발생보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유치원)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신고 및 보고</li> <li>▷ 학교단위 식중독 비상대책반 가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유치원) → 보건소 및 교육(지원)청 → 교육부</li> </ul>
<b>&lt;3단계&gt; 원인.역학조사 준비 및 실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인.역학조사 전 확인사항 준비 철저(붙임2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경위, 최초증상 일자, 주요증세(설사, 구토 횟수) 등 파악 및 기록 철저</li> <li>- 가급적증상이 심한 학생들 대상으로 보건실로 이동토록 안내 하여 보건실에서 1:1면담 조사 실시</li> <li>- 역학조사 종료 전까지 학생들 귀가 보류</li> <li>※ 교내방송, 반별 손들기 등 전수조사 금지</li> </ul> </li> <li>○ 식중독 원인.역학조사 적극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규모.분포도, 특이사항 파악 등 조사 협력</li> <li>- 보존식 및 환경검체(조리도구, 음용·조리용수 등) 수거</li> <li>- 설문조사(환자·대조군 조사), 채변검사 실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유치원)</li> <li>▶ 교육(지원)청 및 지방식약청</li> <li>- 시·군·구(위생부서)</li> <li>- 관할 보건소(감염부서)</li> </ul>
<b>&lt;4단계&gt; 조사 후 조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 제공 여부 결정</li> <li>○ 급식실, 교실 등 학교시설 대청소 및 소독방역</li> <li>○ 가정통신문 등으로 학부모의 이해와 협조 유도</li> <li>○ 학교안전공제회에 발생 사실 통보</li> <li>○ 언론보도 대응 철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유치원)</li> <li>▶ 각 기관</li> </ul>
<b>&lt;5단계&gt; 모니터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증상 학생 지속적 모니터링</li> <li>○ 개인위생관리 지도 및 식중독 예방 교육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및 교육지원청</li> <li>▶ 학교(유치원)</li> </ul>

### 3) 응급구조체계 조직

-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사고의 경우, 시의적절한 응급구조는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일상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관건
  - 응급처치담당, 후송담당, 행정지원 및 유관기관 협조 등으로 구별될 수 있고, 학교실정에 맞게 조직 체계 마련 필요



### 4) 유관기관 협조체계

- 학교안전은 학교 이외의 유관기관, 지역사회, 학부모의 협조.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함
- 안전교육, 안전점검, 비상훈련, 사고구조, 사고복구 등 일련의 학교안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기관명	소방서	경찰서	학부모
포천노곡초	영중소방서	포천경찰서 생활지도, 강의지원	생활지도지원

## 4. 안전 관련 업무

구분	주요 업무	담당자	비고
안전사고예방 체제 구축	비상 대응체계 구성·운영	교감	
	비상 연락체계 구성·관리	교감	
	사후 복구체계 구축·운영	행정실장	
참여형 안전교육 내실화	7대 안전교육 표준안 운영	업무담당	
	교직원 안전교육 운영	업무담당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운영	업무담당	
안전한 교육 여건 조성	학교 출입자 및 학교 시설 관리	행정실장	
	교·내외 순회 및 등·하교 지도	학생안전지킴이	
	학생보호인력 운영	행정실무사	
안전한 학교풍토 조성	보건교육	보건교사	
	안전교육 주간 운영	업무담당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업무담당	
	안전 점검의 날 운영	행정실장, 업무담당	

## II. 세부 추진 계획

### 1. 학교안전사고 예방대책 구축

#### 가. 교육활동 안전 대책

##### 1) 학사일정별 안전관리 연간 계획

구분	학사일정		안전교육	비상훈련	시설관리
	교내	교외			
3월	입학식, 개학식 학교안전계획 작성		학교 교내생활 안전교육	연간 훈련계획 설명회 민방공훈련	매월 안전점검의 날
4월			화재 및 실험실습 안전교육	황사·미세먼지 훈련	매월 안전점검의 날
5월	어린이날 체육대회	현장체험학습	교내·외 안전사고 예방 지도 재난 안전교육	자체 소방훈련	매월 안전점검의 날
6월			수상 안전 예방 지도		매월 안전점검의 날
7월	여름방학		폭염 관련 예방 지도		매월 안전점검의 날
8월	개학		물놀이 및 식중독 예방 지도		매월 안전점검의 날
9월			안전사고 예방 중점지도 추석명절관련 안전	체험학습활동 버스사고 대응 훈련, 민방공훈련(학기당 1회)	매월 안전점검의 날
10월		현장체험학습	등산 및 야외활동 안전교육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화재 등 현장훈련 2회 포함)	매월 안전점검의 날 학교시설 안전점검 실시
11월			화재 예방 지도 강화	실험·실습안전 훈련	매월 안전점검의 날 학교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
12월			겨울철 관련 안전교육		매월 안전점검의 날
1월	겨울방학 졸업식, 종업식		겨울철 야외 활동 안전교육 졸업식 전후 교내·외 안전교육		매월 안전점검의 날
2월			설연휴 관련 안전 학년말 안전예방 활동		매월 안전점검의 날

## 2) 학생 생활 안전 지도

- 학급 조, 종례시간
  - 나침반 5분 안전을 활용한 수시 안전지도
- 교과 실습시
  - 실습시 안전 지도 및 관리 철저
  - 안전장구 활용하여 위험 최소화
  - 가열 또는 전열기구, 칼 또는 날카로운 기구 사용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지도
- 체육활동 시
  - 충분한 준비운동 실시
  - 체육활동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지도
  - 몸이 아프면 교사에게 알리도록 함
  - 놀이시설 및 운동 종목별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함
  - 수업중에는 개별 행동이나 장난을 치지 않음
  - 시설물에 부딪히거나 매달리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함
- 과학수업 시
  - 과학실에서의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 철저 (별도 계획 수립)
  - 기구와 약품 관리 철저
  - 안전장구 활용하여 위험 최소화
  - 화학약품, 위험물질 사용에 대한 취급방법과 안전수칙 지도
  - 알콜램프 등 가열기구 이용 시 주의 사항 지도
- 미술수업 시
  - 미술시간 중 안전사고는 미술도구의 안전한 사용 방법을 중심으로 지도
- 쉬는 시간
  - 복도와 계단에서의 안전수칙 교육 및 안전관리 철저
  - 시설물 점검과 확인 및 학생들의 생활태도 지도
- 점심시간
  - 점심식사 준비와 배식, 식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사고 유형을 파악하고 사전교육
- 청소 시간
  - 담임교사의 입장 지도 철저,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청소 구역의 재배치, 청소용구의 올바른 사용법 지도 및 청소도구로 장난치지 않도록 지도 철저
- 방과 후
  - 놀이기구 및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놀이기구 안전수칙 지도
- 체험학습
  - 사전 안전교육 실시 및 담임교사 책임 하에 체험학습 당일 안전관리 철저

## 3) 외부 체험 활동 안전 대책

- 외부체험활동 안전대책은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시도교육청



별)", 학생생활지도 매뉴얼(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길라잡이) 등에 따라 실시

- 현장체험학습 계획서에 안전대책 수립
- 현장체험학습 (사전) 안전교육
  - 교육프로그램 담당교사는 사전에 준비된 안전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교육
    - 학교 자체계획 또는 수련기관 및 위탁업체와 협의를 통해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학생자치활동 중심의 프로그램 권장
  - 현장체험학습 출발 당일 학생 건강 상태 확인
  - 출발 전 안전사고 예방조치
    - 출발 전 이동 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행렬에서 이탈해도 인솔자의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경유지 또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마련
    - 출발 전 안전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작성하고, 학생들이 주류나 화기물질을 반입하지 않도록 지도
    - 운송업체 계약서 및 입찰공고문 등에 운전자 음주 금지조항 및 보상 조항을 명시하고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치된 차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

○ 체험학습시 주의사항

<b>교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솔 및 지도교사는 수련관련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각종 안전장비의 비치여부, 안전요원 배치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li> <li>- 학교에서는 수학여행, 수련활동 실시 전에 지참금지 물품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알리고, 지참하지 않도록 특별지도 실시</li> <li>- 학생의 안전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와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사전 교육 실시</li> <li>- 교육 기간 중 사전 계획에 따라 교육활동을 총괄하고 지도교사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교육활동의 효율성 제고</li> <li>- 인솔 및 지도교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사시간을 포함한 각종 교육활동에 반드시 참여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사고 예방에 주력</li> <li>- 인솔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유사시 필요한 구급약품 등을 준비하고 이를 각 차량마다 부착</li> <li>- 교통안전지도, 수상안전지도, 화재예방지도, 위험시설 및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지도, 질병예방지도, 성폭행·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지도, 소지금지 물품 휴대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li> <li>- 돌발적인 재난 및 교통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사고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안전지대로 대피</li> </ul>
<b>학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심신 수련에 최선을 다하며, 인솔 교사와 프로그램 진행자의 안전지도 사항을 성실히 준수</li> <li>- 부득이한 사유로 체험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인솔교사의 허락을 받음</li> <li>- 다중 이용 시설(숙소, 식당, 버스터미널, 지하철, 공항 등)에서는 공중도덕을 준수하고 교육활동 중 유해한 장소나 위험한 시설 등에 접근하지 않도록 함</li> <li>-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인솔지도 교사에게 즉시 보고</li> <li>- 차량 운행 시에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탑승 중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li> </ul>

- 비상시에 대비한 상비약품을 준비하여 소지하고, 이동·체험활동 장소의 각종 시설 등에 대해 안전점검 실시
- 이동 또는 체험활동 중 상황별로 적합한 생활지도 및 학생 안전교육 매뉴얼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실시
  - 특히 선박·항공 이용 시 구명조끼 착용 및 비상 탈출 방법 교육 실시
  - 업체에서의 안전교육 실시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솔자는 이행을 요구
  - 대중교통 이용 시 사전 안전교육(귀가 안전교육 포함) 및 교통예절 교육 실시
- 해양 수상 활동, 갯벌체험, 산행, 캠핑(야영), 전시·공연 관람, 겨울철 야외활동 계획 시 사전안전교육 실시 확인

**<해양 수상 활동 사전 확인>**

- ▶ 해양경찰서장, 시·군·구에 등록 업체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 ▶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의 적정 배치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 ▶ 학생 교육 시 활용할 수상레저기구(「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등의 등록여부 확인
- ▶ 인증 프로그램 수련활동 여부(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

- 물놀이 안전수칙
  - 반드시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
  - 식후, 배가 고플 때, 심한 운동 후에는 물놀이를 자제
  - 야외 물놀이를 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함
  - 머리카락이 긴 사람은 묶거나 수영 모자를 씌
  - (※ 물놀이 중에 머리카락이 목에 감길 수 있음)
  - 물에 들어갈 때는 손, 발→다리→얼굴→가슴의 순서로 몸에 물을 적신 후 천천히 들어감
  - 물 깊이를 알고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며, 보호자나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 물놀이를 함
  - 다리에 경련이 발생하면 즉시 물 밖으로 나옴
  - 다음의 증상의 있으면 물놀이를 중지
  -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푸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
  -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
  - 위급할 때는 한쪽 팔을 최대한 높이 올리고 흔들어 도움을 청해야 함
  - 껌을 씹거나 음식을 먹으면서 물놀이를 하지 않음
  - 깊은 물로 떠밀거나 물속에 오래 있기 등의 장난을 치지 않도록 함
  - 신발이나 물건이 물에 떠내려가도 혼자 건지지 말고, 주위의 어른에게 도움을 청함
- 식중독과 같은 집단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곳 선정
    - ▶ 학교장은 사전에 관할 시·군·구(안전 및 급식위생 담당 부서)에 실시 기간, 실시 장소(급식 장소)를 포함한 일정을 통보하고 위생·안전 점검 결과조회 공문 요청
    - ▶ 소규모 현장체험학습 운영으로 소형 일반음식점을 이용함으로써, 해당 시·군·구의 인력 운용상 위생 점검이 어려운 경우 음식위생에 대한 철저한 현장 확인 후 섭취토록 지도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 도시락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생안전이 검증된 업체 이용

- 동일원인(동일음식)으로 추정되는 설사 등 유사증세 환자가 2명 이상 동시 발생할 경우 치료 조치를 한 후 인솔책임자는 즉시 학교장(교육청)에게 보고
- 다중밀집 행사\* 시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행사 진행시 학생·교직원, 사람들 간 대형간격 유지하는 등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철저
- 학교 축제, 체육대회, 입학 및 졸업식, 현장학습, 졸업여행, 교외 행사장 방문 등
- 사고 발생 시 119신고 및 응급조치(참고2) 등 상황에 맞는 응급조치 실시

<b>&lt;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방법&gt;</b>
- 학교 축제, 체육대회, 입학 및 졸업식, 현장학습, 졸업여행, 교외 행사장 방문 등에서 학생·교직원, 사람들 간 대형 간격을 유지하기
- 사람이 많이 밀집된 곳에서는 앞 사람과의 간격 유지하며 걷기
- 움직일 수 없거나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 장소 벗어나기
- 스마트폰을 보거나 주의산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전방 주시하며 걷기
-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주변 사람에게 큰소리로 상황 알리기
- 팔짱을 끼거나 가방, 옷 등으로 흉부 보호하기
- 넘어졌을 때 위험성 줄이기 위해 몸을 작은 자세로 웅크려 보호하기
- 운동화처럼 편하고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신발 신기

#### 4) 안전약자(요양호자) 안전지도

- 신학기 건강실태조사를 통해 건강문제를 가진 학생을 파악
- 개별면담과 정기적인 건강 상담을 통해 요보호학생이 학교생활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응급상황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
- 학교 차원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체 교직원에게 요보호 학생 명단을 배부하는 것과 함께 학생 주요 건강이상 사항, 유의하여 관찰을 요하는 사항, 담당교사 조언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면서 건강이상 학생을 보호
- 요보호학생 기록은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관리(기록지에는 전화번호, 지정병원·투약정보 등 의료 정보, 기타 유의사항 등을 포함)
- 교직원은 요보호학생의 개인 신상, 병력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관리
- 신체적 결함 때문에 심리적으로 손상을 받기 쉬운 상태이므로 급우들에게 장애에 대해 설명을 하여, 놀리거나 곤경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급우들에 대한 설명과 도움 요청은 요보호학생의 부모가 공개를 승인한 경우에 한함)
- 학부모, 담임교사, 보건교사와 수시면담을 통하여 학생의 건강상태나 심리상태를 파악하여 관리
-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요보호학생의 연락처 변경시 보건실로 통보
- 응급상황 시 요보호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5) 통학버스 안전 점검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교육 실시
  - 학교안전책임관 주관 월1회 통학차량 관련자(운전자, 동승보호자 등) 대상 안전매뉴얼

## 교육 실시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 (대상)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기관의 운영자, 통학차량 운전자,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 (방법) 신규 및 매 2년마다 정기교육(3시간, 도로교통공단)
- 통학차량 관련 정기 안전점검 실시(상·하반기 연 2회)
  - 안전교육 이수, 안전수칙 준수, 안전장치, 차량 변동사항(노후화 여부) 확인 등

### ▣ 도로교통법(20. 11. 27. 시행) 및 교통안전법('21. 1. 1. 시행) 주요 개정사항

#### •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시설 확대 (도로교통법 제2조 23호)

근거 법률	현행 시설	추가되는 시설
유아교육법	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초·중등 교육법	초등학교/특수학교	대안/외국인학교

####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 (도로교통법 제53조 제7항)

- 통학버스 운행 시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의 확인에 관한 기록(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

#### • 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에 통학버스 동승보호자를 추가

#### •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6항)

- 통학버스 운행 시 동승보호자 탑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음

#### • 통학버스 관련 위반 시 제재를 강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60조 제1항 제8호)

-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로 강화

\* 동승보호자 미탑승, 어린이 하차 미확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미작동

- 통학버스에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의무화 (교통안전법 제55조 제1항 제3호)

- 기존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 대상(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에 「도로교통법」 제52조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추가

\* 2021.1.1. 신규차량 대상으로 적용하며 2021.1.1. 이전 운행차량은 2022.12.31.까지 경과조치기간 부여

## 6) 학교 안전 관련 학부모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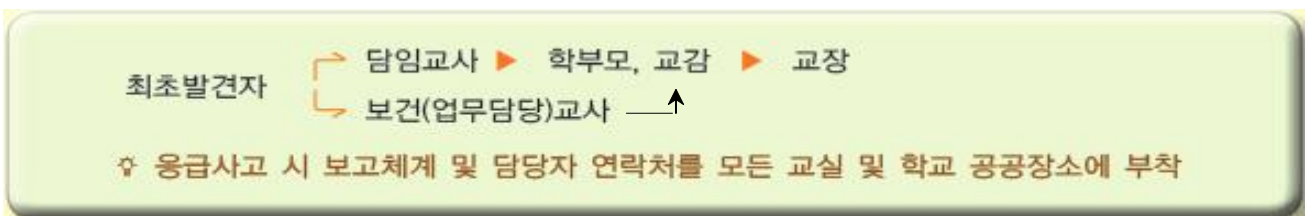
- 학교장은 학기 초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다음 사항들을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학교안전 관련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연간 안전관리계획 통지(학교 홈페이지)

- 건강 이상 학생 학교 통보(아동기초조사서)
- 안전사고 보상제도 통지
- 안전관련 가정통신문 발송 등

## 나. 안전사고 관리 및 재난 대응

### 1) 안전사고 관리 지침 및 대응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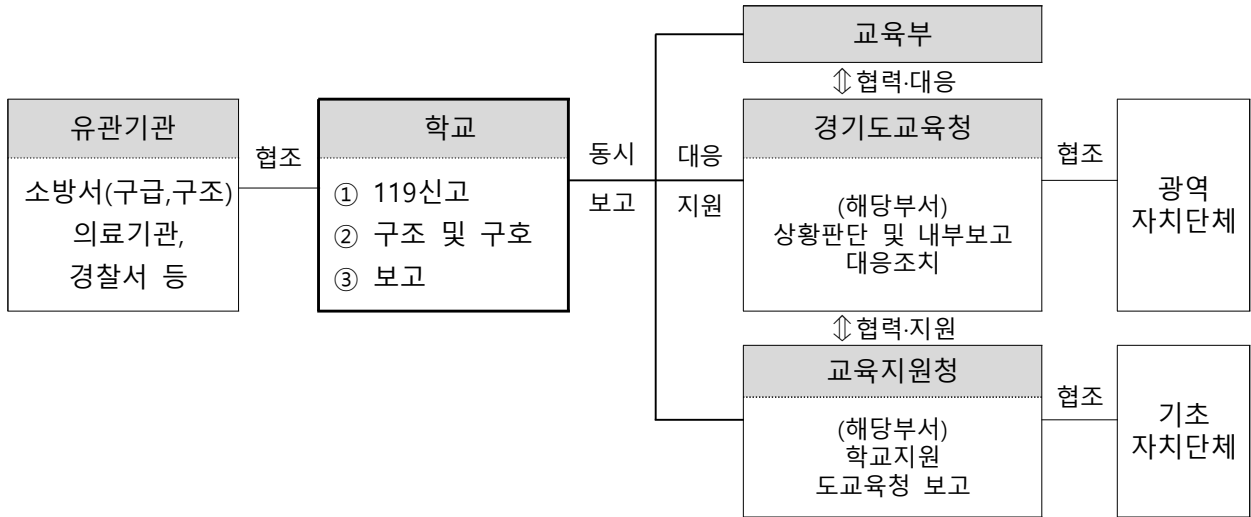
#### ○ 안전사고 관리 지침



[그림4-2] 응급환자 보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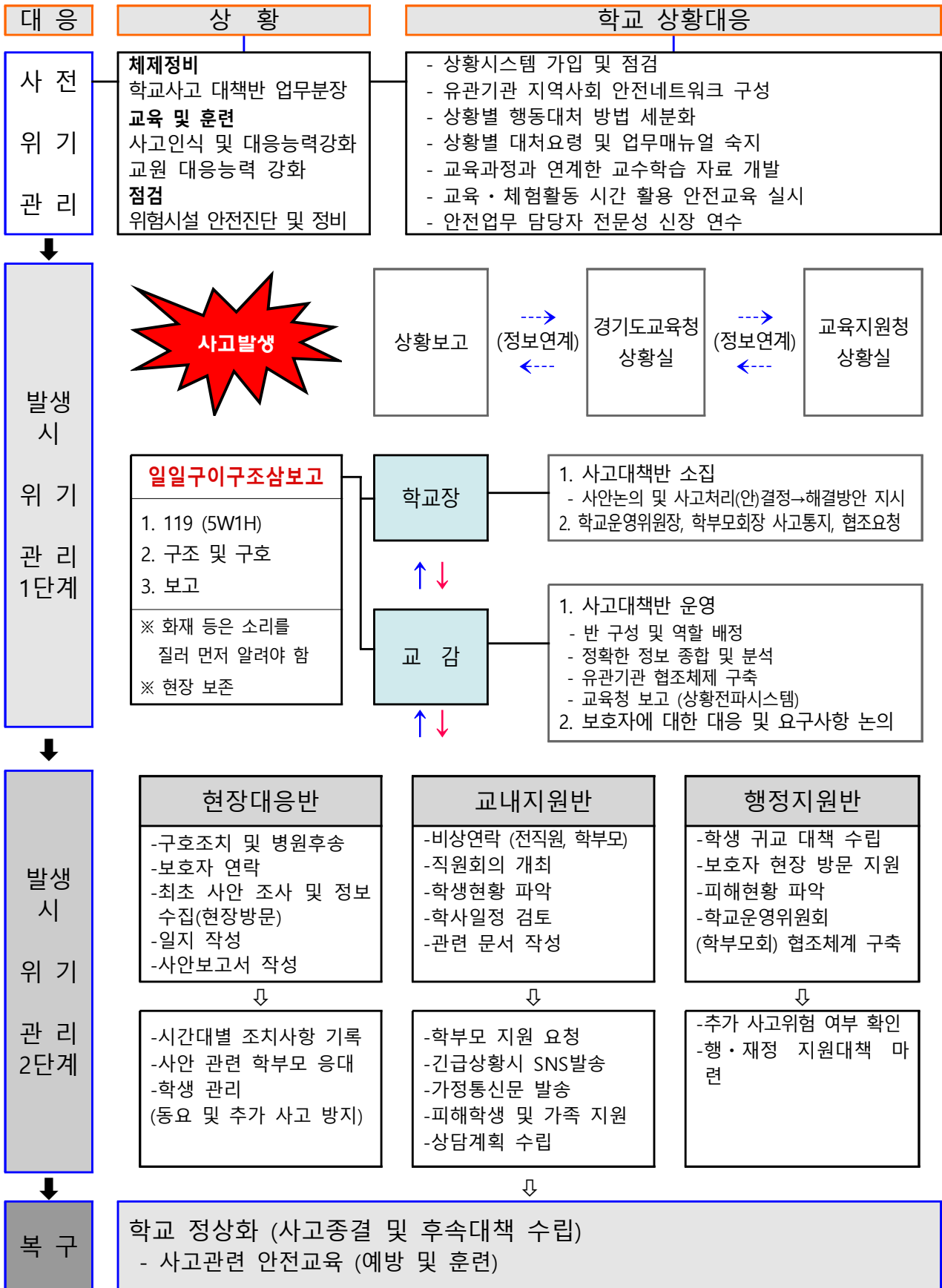
○ 안전사고 발생시

- 학교 안전사고 보고체계 (학교 →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교육부)



○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 체계 가동

- 긴급구조·구호 실시 후 1차 유선보고
- 2차 공문 보고 : 세부현황, 유관기관(119, 소방서, 경찰 등) 협력사항 등
  - ※ 사고발생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보고하는 것이 원칙임. 단, 교직원이 피해자인 경우 본인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경우 개인정보부분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고 가능
- 보고 기관 및 방법 : 교육지원청·도교육청 동시 보고
- (동시보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을 위해 사고현장에서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교육부에 동시 보고
- (보고방법) 현장사고 상황파악 후 교육부 안전 대표메일\*을 통하여 사고 보고(긴급한 사안일 경우 즉시 보고)
  - \* moe119@korea.kr 메일로 사고 보고 시 담당자 개인메일로 자동 전송
- (보고기준)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교육활동 중 발생) 병원치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발생)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학교관련 시설의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학교현장의 폭발사고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 2. 학교 안전교육의 내실화

### 가. 학생 대상 안전교육 실시계획

#### 1) 학년별 안전교육 계획

- 근거 :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 2016-90호)」
- 안전교육 기준 : 7대 표준영역 연간 33차시 이상 안전교육 실시

구분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악물 및 중독 사이버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합계	
공용차시	초	12	11	8	10	6	2	2	51
횟수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3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 학년별 안전교육 내용 (**학년별 교사교육과정에 반영**)

#### 2) 외부 체험활동을 통한 안전교육

- 외부 체험활동을 통한 안전교육은 '학년별 교육과정'에 의하여 실시

#### 3) 생존 수영 실시계획

학년	내용	실시예정일	시간	비고
3,4학년	○ 생존수영 및 자유형 영법 기초교육	2023. 1학기중	12시간	이론(2) 및 실기(10)교육

- 수영교육 실시 중 안전 확보
  - 수영 이론 및 수영장 이용 수칙을 반드시 사전 교육하여 안전사고 예방
  - 수영장에서 수영교육 실시 중 반드시 지도교사 입장지도
  - 수영 전 충분한 준비운동 실시와 학생 건강상태 파악
  - 학생 건강상태 파악 후 환자는 참관교육 실시

### 나.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계획

#### 1) 2023년도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 교직원 안전교육 직무연수 이수
-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 다. 재난대피훈련 연간계획

#### 1) 재난대비 훈련 연간계획

※ 교육과정 운영상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일정	훈련명	훈련유형	대상	담당자	비고
3월	연간 훈련계획 설명회	토론기반훈련	모든 교직원	안전	
4월	황사·미세먼지 훈련	토론기반훈련	학교장 및 담당 교직원	보건교사	
5월	화재 훈련	현장훈련	모든 교직원과 학생	안전	CPR
7월	복합재난훈련	현장훈련	모든 교직원과 학생	안전	
9월	체험학습활동 버스사고 대응 훈련	토론기반훈련	체험학습 지도교사	안전	
10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화재 등 현장훈련 2회 포함)	워크숍 및 현장훈련 등	모든 교직원과 학생	안전	
11월	실험·실습안전 훈련	토론기반훈련	학교장 및 담당 교직원	과학전담	

### 3. 학교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 조성

#### 가. 학교 시설 안전 점검(별도 계획)

##### 1) 매월 안전 점검의 날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6
- 경기도 교육청 지침에 따라 점검 실시

##### 2)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안전 점검

- 경기도 교육청 지침에 따라 점검 실시

#### 나. 학교 시설 안전 관리 및 조치(행정실 별도 계획)

##### 1)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관리 및 조치 <별첨 11>

-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 2023 상반기 : 학교시설 안전관리 담당자 점검 원격연수 및 행정조치 전달연수
- 2023 하반기 : 학교시설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시설 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관리

- 학교안전법 제7조는 교육부장관이 통보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시설물을 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학교장은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 <표9-33>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규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작성하여 이를 교육감 및 학교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소관 학교 시설 등을 설치·유지 또는 관리하는데 있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표9-34>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 결과를 점검 후 2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교장의 보고를 기초로 개선이 필요한 학교안전시설에 대하여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4.>

- 점검 대상 : 유.초.중.고등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 점검 내용 :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6개 분야 26개 항목

**<표9-35>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개관**

분야	안전기준 항목
건축물	건축물 주변, 교실바닥, 교실벽, 교실문, 교실 창호, 특별교실, 복도, 계단, 화장실, 그 밖의 사항
전기시설	수변전설비, 분전반, 전기배선, 조명설비, 전열설비
설비시설	냉난방설비, 환기시설, 급배수설비 등
소방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옥내소화전설비 등, 피난설비
가스시설	저장시설, 배관, 가스 기기
실험실습시설	실험실습 설비 및 비품, 약품보관설비
<b>6개 분야</b>	<b>26개 항목</b>

- 점검 절차 및 방법
  -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한 집계표를 지역교육지원청에 제출
  - 지역교육지원청은 학교에서 제출된 집계표의 소요예산 등 적정성을 검토한 후 시도교육청에 집계표를 취합하여 제출
  - 시도교육청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제출된 점검결과 보고에 기초하여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시행
- 점검결과 조치계획
  - 점검결과 안전기준 미흡시설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기준에 적합조치토록 노력하며,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환경개선사업계획에 반영

\*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체크리스트

**실시 결과보고 서식**

가. 점검 일시 : 2023. . .

나. 학교 자체 개선 사항

	주요내용	투입 예산(천원)
1		
2		
3		
계		

다. 개선 지원 요청 사항: 학교 ⇒ 교육(지원)청

	주요내용	추정 소요예산(천원)
1		
2		
계		

[붙임]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점검결과표 1부. 끝.

## 2) 개별 법령에 의한 학교시설물 관리

구분	관계법령	주요내용
건축	건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공사 설계도서 건축사 작성(제23조)</li> <li>◦ 건축허가 대상 공사의 건축사 감리 지정여부(동법 시행령 제19조)</li> <li>◦ 철거예정 7일전 시장군수 구청장 신고(제36조)</li> <li>◦ 건축물 철거 후 멸실 신고(제36조)</li> <li>◦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철거의 경우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제거 및 결과의 기록 보관 (제36조)</li> </ul>
전기	전기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73조)</li> <li>◦ 전기안전관리자의 정기점검* 실시(제65조)</li> <li>*매월 1회 이상, 용량별로 월 3회 이상</li> </ul>
도시가스	도시가스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자 선임(제29조)</li> <li>◦ 도시가스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제30조)</li> <li>◦ 점검기관(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연 1회 이상 정기검사(제17조)</li> </ul>
승강기	승강기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승강기관리교육*(제16조)</li> <li>*승강기안전관리자가 지정 3개월 이내 교육이수</li> <li>◦ 월1회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기록부 보관(제17조)</li> <li>◦ 연1회 이상 정기검사 및 정기정밀점검*(제13조)</li> <li>*설치 후 15년 이상된 승강기 및 중대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대상</li> </ul>
수도시설	수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시설에 절수설비 설치(제15조)</li> <li>◦ 저수조 청소*실시, 위생상태 점검** 기록보관 및 수질검사*** (제33조)</li> <li>*반기1회 이상, **월1회 이상, ***연1회 이상</li> <li>◦ 수도관리자 교육(제36조)</li> <li>※ 1년내 8시간의 집합교육 및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교육</li> </ul>
하수도시설	하수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화조 내부청소* 연1회 이상 실시(제33조)</li> <li>*침전찌꺼기와 부유물질 등 제거</li> </ul>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 최단거리 이동편의시설 설치(제3조)</li> <li>◦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정(제17조)</li> <li>◦ 장애인 접근로 적정 설치(동법 시행령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에 휠체어 통행용이 및 출입문 시설</li> <li>- 장애인 복도 통행에 지장 없는 관리</li> <li>- 장애인용 계단 또는 승강설비 적정 설치</li> <li>- 장애인용 대.소변기 설치</li> <li>-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구비</li> </ul> </li> </ul>
소방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법 제10조)</li> <li>※ 시설폐쇄, 훼손여부 및 주위 장애 사항 등</li> <li>◦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제5조)</li> <li>◦ 자위소방대 편성·운영(규정 제12조)</li> <li>◦ 소방안전교육과 훈련 실시(규정 제14조)</li> <li>※ 연2회 이상 실시 중 1회는 소방서와 합동 훈련</li> <li>◦ 자체점검계획 수립 및 자체점검(월1회 이상), 기록보관(규정 제15조)</li> <li>◦ 소방종합정밀점검(연1회 이상) - 소방서장 보고(법 제19조)</li> <li>◦ 각실 책임자의 화기단속 및 예방 조치(규정 제9조)</li> </ul>
석면	석면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시설 석면조사 실시 및 결과 보관(제21조)</li> <li>◦ 석면조사결과 보고 - 교육감(제22조)</li> <li>◦ 석면안전관리자 지정 보고 - 교육감(제23조)</li> </ul>

구분	관계법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면안전관리자 안전관리 교육(제24조)</li> <li>※ 관리자 신고 후 1년 이내 6시간 이상</li> </ul>
급식시설	학교급식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한 조리기기, 냉장·냉동시설, 세척·소독시설 구비(제7조)</li> <li>◦ 급식관리실에 필요한 사무장비 구비(제7조)</li> <li>◦ 조리종사원 숫자에 맞는 휴게시설 구비(제7조)</li> <li>◦ 급식시설 설치 시 기준*에 따라 시설설비 구비(시행규칙 제3조)</li> <li>*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시설설비 기준</li> </ul>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검사기관 정기시설검사(2년 1회 이상) 결과 표시(제12조)</li> <li>◦ 자체안전점검 월1회 이상 실시(제15조)</li> <li>◦ 3년간 안전진단실시결과 기록보관(제17조)</li> <li>◦ 놀이시설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실시(제20조)</li> <li>※ 2년 1회 이상, 1회 안전교육 4시간 이상</li> <li>◦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가입(제21조)</li> <li>◦ 어린이 놀이시설 사용금지의 경우 관리감독기관에 통보(제16조)</li> <li>◦ 어린이 놀이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적합(제11조)</li> </ul>
외부인 출입	초·중등교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인 출입, 학교폭력예방 학생안전대책 수립(제30조)</li> <li>◦ 학교 환경위생담당자 지정·관리(규칙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내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 관리</li> <li>-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li> <li>-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li> </ul> </li> </ul>
학교보건	학교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실 66㎡이상 확보 및 세부기준 적합여부(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li> <li>◦ 학생안전교육, 학교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조치(제12조)</li> <li>◦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li> <li>-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 관리</li> </ul> </li> </ul>
공사발주	산업안전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발주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제30조)</li> <li>◦ 석면 해체 시 등록업체(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 해체·제거(제38조)</li> </ul>
시설사업 촉진	시설사업 촉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신설, 학교용지 변경시 교육청에 사업시행계획 승인(제4조)</li> <li>◦ 학교용지 내 시설물 증축, 대수선의 경우 교육청 건축승인(제5조)</li> <li>◦ 시설사업 종료 후 7일 이내 교육청 신고 및 건축물 사용승인(제18조)</li> </ul>
폐기물 관리	폐기물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폐기물의 종류, 성질, 상태별 분리보관(제15조)</li> <li>◦ 사업장 폐기물의 전문업체 위탁 처리 여부(제15조)</li> </ul>
하수도	하수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내 하수 및 배수관 신설의 경우 공공하수도 유입(제2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내 오수 배출 건물 증축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제34조) *정화조 등의 시설</li> <li>-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제37조)</li> <li>-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준*의 의한 설치(제24조)</li> </ul> </li> <li>*하수처리구역안 정화조설치, 하수처리 구역 밖 1일 오수처리량 2㎡이상 오수처리 장치 연결, 그 이하 정화조 설치</li> </ul>

## 4. 학교안전 문화 확산

### 가. 안전 업무 관련 교직원간 협력 체계구축

#### 1) 안전 가치의 최우선적 인식 문화 확산

- 각종 교육 행사 시 사업 주최(주관)부서는 계획수립 단계에서 부터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시행
  - 위기발생시 대피로, 소화기의 위치, 안전관련 간단한 지식 등 홍보
  - 안전관련 지식은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자료 활용
  - 비상차량(119차량 등)은 즉시 이동 할 수 있도록 통행로 확보
  - 응급치료용 약품 및 자동제세동기 비치(예산 확보)
- 학교는 체육대회, 축제, 입학식 등 각종 행사시 계획 단계에서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시행
  - 외부인(학부모)이 참석하는 행사, 100명 이상이 참가하는 행사 시
  - 위기발생시 대피로, 소화기의 위치, 안전관련 간단한 지식 등
  - 안전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안전교육 우수사례 일반화 등
- 학부모 등에 대한 연수 시 동영상, 리플렛 등을 이용하여 학교안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안전 관련 정책에 관심과 참여를 유도학교 안전의 가치는 안정적 교육활동 수행의 기본 전제가 되므로 제반 교육활동 계획 수립부터 실시예 이르기까지 최우선적으로 학교 안전의 가치를 고려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

#### 2) 안전 업무 관련 교직원간 역할 명료화

- 학교장은 학교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교원과 직원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설정
- 학교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안전한 교육활동이 되도록 적극 노력
  - ※ 학교안전은 담당 교원만으로는 업무추진이 어려우므로 교원과 직원 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

### 나. 학교안전 자가점검표

#### 1) 학교안전 자가점검표 작성

- 학교구성원의 안전 관련 이행사항(기본계획 1호~6호)에 대한 <붙임 7>의 "학교안전 자가점검표"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계획수립에 체크하여 작성

#### 2) 3대 진단(위험성 진단, 학교안전풍토 진단, 교원안전역량 진단) 내용의 포함

- 자가점검표에는 기존의 교육부 연구에 의해 마련·시행 중인 위험성 진단, 학교안전풍토 진단, 교원안전역량 진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 ※ 3대 진단(위험성 진단, 학교안전풍토 진단, 교원안전역량 진단)은 2020년도부터 학교안전 자가점검표로 대체되므로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됨

## 5.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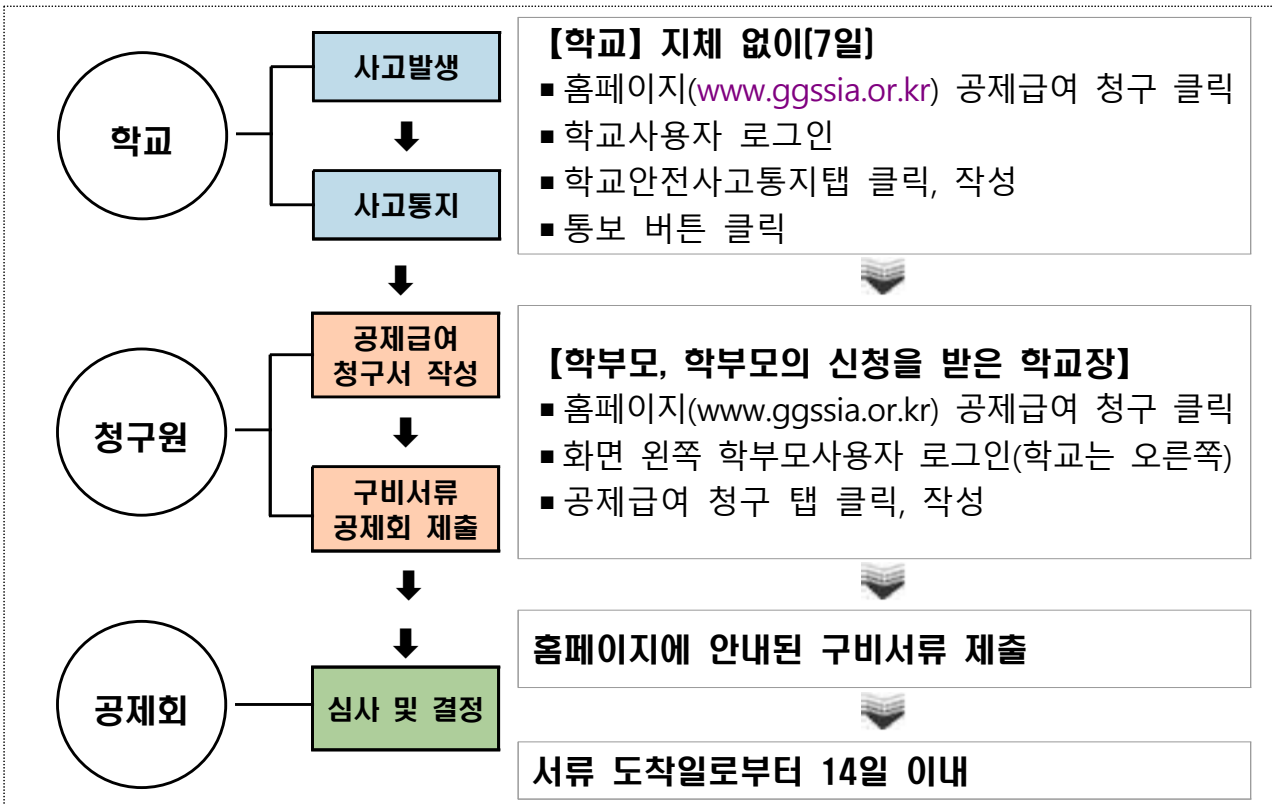
### 가. 상담 및 치료 지원

-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유 법령과 지침을 참고하여 실시

### 나.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 1)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제도

- 공제 급여 절차



#### 2)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피해복구

- 재난 피해 발생시 피해규모를 파악하여 복구비 지급신청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복구비 신청절차
  - 재난 발생 → 공제회로 재난 발생 신고 → 교육지원청으로 신청서류 송부

공제사업	학교안전공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사각지대 공제사업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교육 연구시설공제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공제료 납부	행정실	행정실	행정실
사고통지 담당	보건교사	행정실	행정실
보상청구 담당	보건교사	행정실	행정실

### 나. 학교안전사고 피해회복지원

- 향후 정책연구를 통해 학교안전사고 피해회복지원단과 분쟁조정지원단이 구성되고 활동이 개시되면 개별학교에 대해 제도 시행을 통보 예정
- 개별학교는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

[붙임 1]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응급증상 및 응급에 준하는 증상

구 분	응급증상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계	급성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두부 손상	의식장애,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심혈관계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호흡곤란, 과호흡
외과계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 광범위한 화상(신체 표면적의 18%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대퇴부 척추의 골절, 혈관손상, 다발성외상,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화상, 급성복통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밖에 응급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혈관손상 등
안과계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안통, 눈 출혈 등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피부에 나타난 이상반응
정신과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소아과계	소아 경련성 장애	소아경련, 38℃ 이상의 소아고열
이물질에 의한 응급증상		귀·눈·코·항문등에 이물질이 들어가 제거가 필요한 경우

※ 이외의 심한 치통, 치아손상 등 신속을 요하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관련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재구성

## [붙임 2] 상황별 처치방법

### □ 일반생활 응급처치

코의 상처 (코피, 비출혈)

둔탁한 물건 등에 의해 코에 충격을 받거나 고혈압, 고도의 변화 등에 의해서 발생된다.

#### 처치

- 1)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여 혈액을 삼키거나 기도로 흡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 2) 코뼈 바로 아래 부분을 5~10분간 눌러준다.
- 3) 콧등을 얼음주머니 등으로 대어주거나 코 아래 윗입술 바로 위를 압박한다.
- 4) 출혈이 멈추었더라도 바로 코를 풀지 않도록 한다.

#### 코피 주의사항

피(비출혈)가 20분 이상 지속되거나, 코뼈가 부러진 것이 의심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입의 상처

입의 상처는 피와 흔들리는 치아로 인해 기도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치료할 때는 환자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 응급처치

- 1) 머리, 목, 척추 부상이 없으면 머리를 전방으로 숙이고 앉아 있게 한다.
- 2) 머리, 목, 척추 부상이 있으면 회복자세를 취해준다.
- 3) 입술 관통상 일 경우, 입술과 잇몸 사이에 둥근 드레싱을 대어주며, 입술과 혀에 차가운 것을 대어준다.

치아 빠짐 (유실)

치아가 빠졌을 때, 신속한 지혈과 치아를 재이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응급처치

- 1) 치아의 유실 시간을 파악한다.
- 2) 유실된 치아를 입안에 넣어 병원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어린아이의 경우 삼킬 수 있으므로 자제한다.
- 3) 가장 좋은 방법은 유실된 치아를 우유에 넣어서 보존하는 방법이다. 만약 우유가 없다면 깨끗한 물에 넣어 보존한다.
  - ☞ 유실된 치아를 우유에 보존하는 이유  
우유는 구하기 쉽고 멸균이 되어있고 세포가 죽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농도와 영양분을 가지고 있다.
- 4) 가능한 1시간 이내에 치과 병(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 5) 유실된 치아의 뿌리 부분은 절대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 치아유실 후 빠른 병원 방문의 중요성

치아가 빠진 후 15분 내에 다시 심었을 때 부작용은 거의 없으며 빠진 치아가 공기 내에서



30분 이상 노출되면 치아를 재이식해도 대부분 뿌리가 흡수되는 부작용이 생긴다. 즉, 치아의 유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느냐에 따라 예후가 달라진다.

#### 귓속의 이물

귓속에 파리 또는 벌레가 들어간 경우 불빛으로 유도해 밖으로 빼낸다. 이물을 바늘이나 철사 같은 것으로 빼낼 경우 귀 손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한다.

[출처: 교육부, 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29~130]

## □ 드레싱

### 드레싱의 용도

감염방지, 출혈방지, 분비물 흡수

### 드레싱의 종류

- 1) **거즈** - 작은 상처에 사용되며 크기별로 나뉘어서 멸균 포장되어 있다. 일부 거즈는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 상처에 달라붙지 않으므로 특히 화상부위나 분비물이 있는 상처에 유용하다.
- 2) **접착 드레싱** - 혈액이나 액체가 응고 되었을 때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일회용 밴드처럼 생긴 것은 무균 드레싱과 붕대를 혼합한 형태로 작은 베인 상처나, 긁힌 상처에 유용하다.
- 3) **외상용 드레싱** - 크기가 크고 두껍고 흡수성이 있는 소재로 소독이 되어 있으며 주로 출혈이 심한 베인 상처나 벗겨진 상처에 유용하다.

### 드레싱 할 때 주의할 점

- 1) 솜뭉치나 뭉친 약솜을 드레싱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2) 출혈이 멈출 때까지 젖은 드레싱을 떼지 않는다. 피가 멈추지 않으면 새로운 드레싱을 덧댄다.
- 3) 상처에 달라붙은 드레싱을 억지로 떼어 내지 않는다. 만일 떼어 내야 한다면 따뜻한 물로 적신 후 조심스럽게 떼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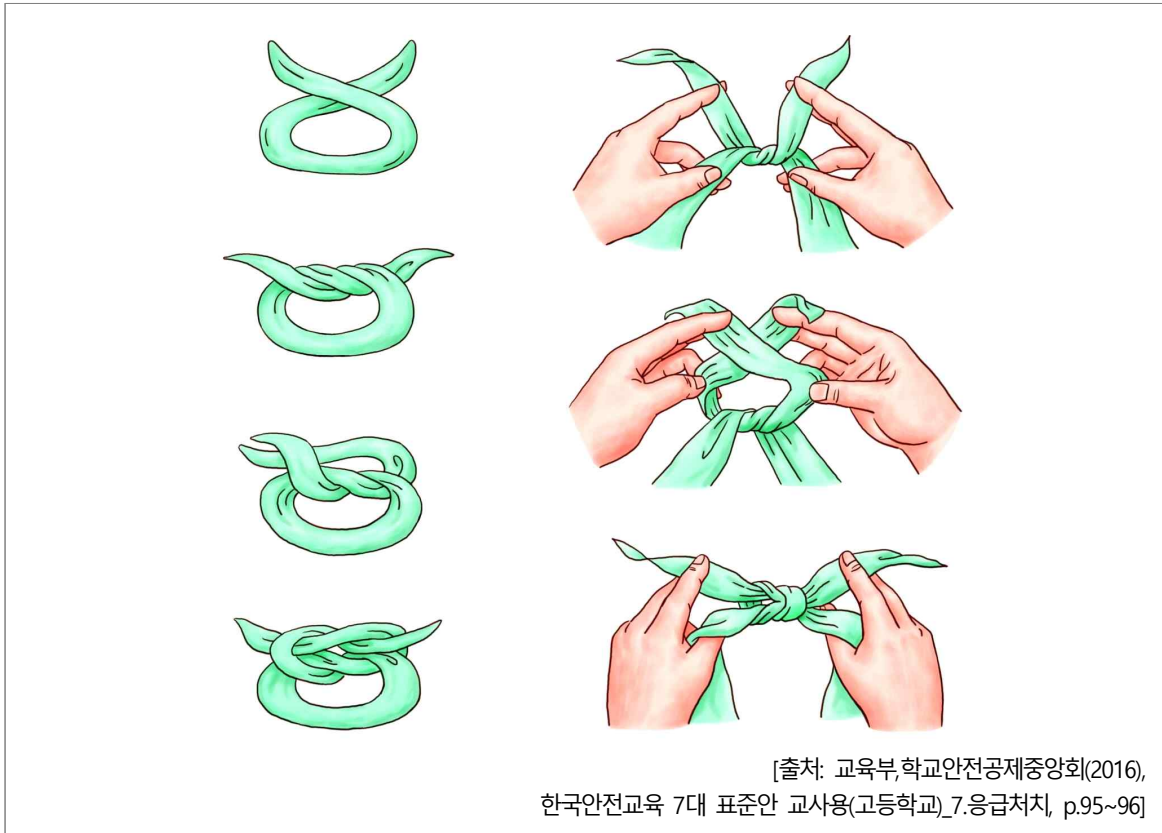
## □ 붕대 용도

- 1) 드레싱이 상처에 붙어 있게 고정
- 2) 부목의 고정
- 3) 압박을 통한 지혈
- 4) 감염 등으로부터 보호
- 5) 부기(浮氣) 예방

## 붕대의 종류

- 1) 탄력 롤 붕대 : 염좌 등 압박 및 고정용으로 사용한다.
- 2) 사두붕대 : 양 끝을 잘라 귀가 네 개 있는 모양. 돌출된 부위에 유용하다.
- 3) 삼각건 : 반창고가 없어도 드레싱을 고정시킬 수 있으며,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 삼각건 매듭법



## 삼각건을 사용하여 상처 응급처치하기

### 머리

머리에 댄 드레싱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특히 머리에 넓게 상처를 입었을 때 사용한다.

- 1) 삼각건의 밑변 부위를 폭이 약 5cm 정도 되도록 접는다.
- 2) 접은 부분의 중심이 이마 중앙의 눈썹 위에 오게 한다.
- 3) 삼각건의 양끝을 머리 뒤로 돌려 감고 교차하여 다시 앞으로 오게 하여 이마 중앙에서 묶는다.



## 어깨

어깨나 상완(위팔)에 댄 넓은 드레싱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두개의 삼각건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중의 한 개는 좁게 접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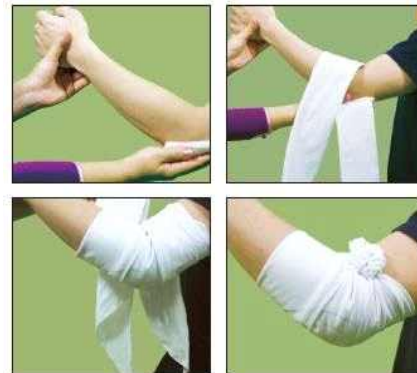
- 1) 펴 놓은 삼각건 꼭짓점 부근에 세 번 접은 다른 삼각건을 놓고 밑변이 평행하도록 하여 2~3번 접는다.
- 2) 넓은 삼각건으로 상처를 덮고 접은 삼각건의 양 끝을 부상당하지 않은 쪽의 겨드랑이 바로 앞에서 묶는다.
- 3) 부상당한 어깨 쪽 삼각건의 양끝을 겨드랑이 밑으로 돌렸다가 다시 상완부에 돌려서 단단히 묶는다.



## 팔꿈치

팔꿈치의 상처에 댄 드레싱을 고정시키고 팔꿈치의 운동도 가능케 한다.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린 자세로 삼각건을 감는다.

- 1) 삼각건의 넓이를 7~10cm로 만든 후 드레싱 위를 중심으로 놓고 감기 시작한다.
- 2) 한번 돌려 감은 후, 한 쪽은 팔꿈치 위쪽으로 돌려 감아 주고 다른 한 쪽은 아래쪽으로 돌려 감아준다.
- 3) 삼각건의 양 쪽 끝이 팔꿈치 관절의 바깥쪽에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나게 한 후 묶어준다.



[출처: 교육부, 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92]

## □ 탈구

정의

뼈가 정상위치를 이탈했거나 분리된 상태를 말한다.

증상

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관절의 모양이 변하고 붓는다.

응급처치

- 1) 비상사가 아니면 비의료인이 탈구를 바로 잡으려 하면 안 된다.
- 2) 부상부위를 편하게 하고, 냉찜질을 하여 통증과 부기(浮氣)를 가라앉힌다.
- 3) 쇼크에 대한 응급처치를 병행한다.

[출처: 교육부, 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 □ 염좌

### 정의

인대 등 관절조직이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파열된 상태를 말한다.

### 원인

관절을 형성하는 뼈가 정상운동 범위를 심하게 벗어날 경우 주로 발생한다.

### 증상

- 1) 손상과 동시에 부어오르기 시작하며 통증을 유발한다. 부상부위를 움직일 경우 통증이 심해진다.
- 2) 부상부위의 피부색이 곧바로 변하지는 않지만, 변색될 경우 장기간 지속된다.

### 응급처치

- 1) 부상부위가 손목일 경우 팔걸이를 하여 고정시키고, 발목일 경우 환자를 눕히고 부목, 삼각건 등을 활용하여 고정시킨 후 부상부위를 높여준다.
- 2) 전문기관의 치료를 받기 전까지 상처 부위를 차갑게 해주는 것이 좋다.
- 3) 염좌가 심하다면 의료인이 도착할 때까지 가급적 움직이지 않는다.
- 4) 발목 염좌가 있는데 혼자 걸어야 한다면, 신발을 신은 채로 신바닥 굽 바로 앞에 접은 붕대의 중간을 대고(신발은 벗은 상태라면 발등위에 접은 붕대의 중간을 대고 발바닥을 한 번 감은 뒤) 양끝을 발뒤꿈치 위(뒤)에서 교차시킨 후 다시 발목 앞으로 돌려 교차시켜 양끝을 발뒤꿈치의 양쪽을 지나간 붕대 밑으로 넣어 걸어서 다시 발등에서 묶는다.
- 5) 발목 염좌는 되도록 걷지 말고 신속하게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출처: 교육부, 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00~102]

## □ 근육염좌

### 정의

근육이나 건 섬유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거나 찢어진 것

### 원인

근육을 심하게 사용하거나 갑작스런 움직임이 있을 때 발생

증상

관절사이의 통증, 부종, 기형이 발생한다.

응급처치

염좌의 처치내용과 같이 부상부위를 안정시키고, 냉찜질을 한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00~102]

□ 근골격의 손상 시 일반적인 응급처치

뼈의 골절이 의심되는 때의 응급처치

- 1) 골절이 의심되거나 골절된 환자는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 2) 환자를 함부로 옮기거나, 다친 곳을 건드려 부러진 뼈끝으로 골절을 악화시키게해서는 안된다.
- 3) 굽은 곳을 바로 펴려고 하지 말고, 밖으로 돌출된 뼈를 안으로 밀어 넣어서는 안된다.
- 4) 골절이나 탈구 가능성이 있거나 의심이 되는 곳은 전부 부목을 댄 후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다.
- 5) 출혈이 심하면 지혈을 한 후 부목으로 고정하여 병원으로 후송한다.

탈구(관절이 빠졌을 때) 시 응급처치

베게나 쿠션을 사용 부상자를 가장 편한 자세로 유지해 주고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다.

염좌(근막 또는 인대 손상 등) 시 응급처치

- 1) 관절 주위의 인대나 조직의 손상으로 흔히'삔었다'고 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 2) 부상자가 가장 편한 자세로 관절을 지탱해 주고 손상된 부분을 높게 해준다.
- 3) 찬 얼음으로 부은 것과 통증을 감소시켜 주면 효과적이다.
- 4) 골절과 같은 처치로 부목을 대준다.

부목사용의 목적

- 1) 부러진 뼈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 폐쇄골절이 개방골절로 되는 것을 예방한다.
- 2) 신경, 근육과 혈관 손상을 최소화한다. 즉, 부러진 뼈끝이 주위 조직을 건드려 출혈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한다.
- 3) 동통을 경감한다.

발목 발등골절	염좌	하퇴골(정강이와종아리)골절
		

### 휴식(Rest)

- 1) 통증이 유발되는 움직임과 운동은 피하게 하고, 환자가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게 해준다.
- 2) 머리, 목 손상 의심 시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힌다.

### 얼음찜질(Icing)

- 1) 손상부위에 거즈나 의복을 대어 피부손상을 예방한 후 얼음 등을 이용해 차갑게 해준다. 얼음찜질은 부기(浮氣)와 통증, 불편함을 감소시킨다.
- 2) 얼음은 별도의 얼음주머니를 활용하거나 없을 경우 수건이나 옷에 싼 후 이용한다. 단, 개방성 골절에는 얼음찜질을 하지 않는다.
- 3) 손상부위에 10분간 냉찜질을 한 후 손상부위를 확인했을 때 심하게 차갑다고 느낀다거나 빨갛게 된다면 냉찜질을 중단한다.

### 압박(고정)(Compression)

- 1) 근골격계 손상이 의심되면 얼음찜질을 하거나 높여 주기 전에 부목 등으로 손상부위를 고정한다.
- 2) 압박(고정)의 목적
  - 통증 감소
  - 주변의 연한 신체조직 손상방지
  - 심각한 출혈의 위험성 감소
  - 손상 부위의 혈액순환 개선
  - 폐쇄성 골절이 개방성 골절로 악화될 가능성 예방

### 올리기(손상 부위 높임)(Elevation)

- 1) 손상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여 혈류량을 감소시켜 부기(浮氣)를 줄여준다.
- 2) 골절이 의심되는 부위는 부목을 대고 높여 준다.

[출처: 교육부, 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00~102]

### 손상부위에 부목을 사용 시 고려할 점

- 1) 가능한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손상부위를 지지하면서 부착한다.
- 2) 개방골절은 출혈, 감염방지를 위해 골절부위를 지지하고 붕대를 감아준다.
- 3) 단단한 부목사용 시 부드러운 천 등을 감싸주면 좋다.
- 4) 부목사용 시 부목과 신체 사이의 빈 공간에 고임(삼각건, 천 등을 활용)을 넣어 주는 것이 좋다.
- 5) 부목은 삼각건, 붕대, 옷 등을 이용해 잘 고정한다.
- 6) 손가락, 발가락 끝을 자주 확인하여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확인하며, 부목을 댄 아래쪽이 저린다거나, 손, 발가락의 피부색이 변할 경우 부목을 잠시 풀어준다. (30분마다 한 번씩 혈액순환 확인)
- 7) 가능하면 부목을 댄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고 충격처치를 병행한다.

## □ 화상

### 화상의 정의

과도한 열, 화학물질, 전기, 태양열, 방사능 등에 의해 피부조직에 손상이 유발되는 것  
→ 화상으로 피부가 벗겨지게 되면 감염이 유발될 수도 있고, 신체로부터 나오는 체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체의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손상될 수도 있다.

### 화상의 원인(연령별)

- 1) 3세 이하의 소아 - 가정에서 끓는 물
- 2) 3~14세 - 불장난 등으로 인한 화염 또는 그을림
- 3) 15세 이상 - 작업상의 사고

### 화상 응급처치

#### 화상처치의 4가지 기본단계

- 1) 화상부위를 냉각시킨다.
- 2) 감염예방을 위해 화상부위에 드레싱을 해준다.
- 3) 쇼크 응급처치를 병행해 준다.
- 4) 의료적 도움의 필요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 한다.

### 학교에서의 화상 상황

- 1) 핫팩 : 저온 화상
- 2) 주전자(포트) : 컵이나 종이컵에 물을 붓다가 화상
- 3) 컵라면 : 컵라면에 물을 붓다가 화상을 입거나 컵라면 용기를 들고 이동 중 물을 쏟아 화상을 입음

### 화상의 종류와 증상

<b>1도 화상</b> (표재성/홍반성 화상, Superficial Burns)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피부의 외피층만 손상된 것으로 대부분 일광에 의해 발생한다</li><li>• 증상 : 피부가 빨갛게 되고, 따끔거리는 통증이 있다</li><li>• 치료하면 대부분 특별한 흉터 없이 5~6일 안에 완치된다</li></ul>
<b>2도 화상</b> (부분층/수포성 화상, Partial-Thickness Burns)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피부의 외피와 표피, 진피까지 손상된 화상이다</li><li>• 증상 : 물집, 심한 통증, 흉터나 피부변색(붉어짐), 탈모 등이 생긴다</li><li>• 치료해도 흉터가 생길 수 있으며, 보통 3~4주 안에 완치된다</li></ul>
<b>3도 화상</b> (전층/괴사성 화상, Full-Thickness Burns)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피부의 전층, 피하지방, 근육, 뼈, 혈관, 신경 등 하층 구조까지 손상된 화상</li><li>• 증상 : 상처부위가 갈색 또는 거무스름하고, 아래에 있는 조직은 새하얗게 되고, 통증이 심하거나 신경의 끝부분이 파괴되어 통증이 없을 수 있다</li><li>• 치료해도 대부분 흉터가 남으며, 광범위한 3도 화상은 사망할 수도 있다</li></ul>

화상 발생 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 1) 된장, 간장, 기름, 약 등을 바르지 말 것(세균 감염 우려)
- 2) 물집을 터트리지 말 것(세균 감염 우려)
- 3) 눈 화상 경우 문지르지 말 것(각막 손상으로 실명 우려)
- 4) 떨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떼어내지 말 것(피부손상, 세균 감염)
- 5) 피부가 부어오르기 전 시계, 반지 등 귀금속 제거할 것

출처: 응급처치법(대한적십자사)

[출처: 교육부, 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11~112]

□ 열성질환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일사병)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온에서 과도한 활동 후 체내 수분과 염분 소실로 일어나는 질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땀을 과다하게 흘려 체내 수분이 떨어짐과 동시에 피부로 가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질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온의 태양열 등에 의해 뇌의 체온중추기능이 마비되어 일어나는 질환</li> </ul>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온의 환경에서 강도 높은 운동과 노동을 할 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시간 고온에 노출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시간 햇볕에 노출되는 경우</li> </ul>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육 경련 (다리 및 복부에 많음)</li> <li>따뜻하고 습한 피부</li> <li>체온은 정상이거나 약간 높음</li> <li>많은 양의 땀 분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두통, 현기증, 메스꺼움</li> <li>차갑고 축축하며 창백한 피부</li> <li>체온은 정상</li> <li>빠르고 약한 맥박</li> <li>심한 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온상승</li> <li>건조하고 따뜻한 피부</li> <li>의식을 점차 잃음</li> <li>초기에는 강하고 빠른 맥박, 점차 느리고 약해짐</li> <li>초기의 깊은 호흡에서 점차 얕은 호흡</li> </ul>
응급 처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함</li> <li>진하지 않은 소금물, 스포츠 음료를 줌</li> <li>경련이 일어난 부위를 마사지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함</li> <li>옷을 느슨히 함</li> <li>젖은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냄</li> <li>의식이 있으면 시원한 물을 섭취</li> <li>높은 상태에서 다리를 높여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함</li> <li>옷을 느슨히 함</li> <li>젖은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냄</li> <li>가능한 빨리 의사의 치료를 받음</li> <li>환자의 머리, 어깨를 약간 높임</li> </ul>

열경련(Heat Cramps)

**정의**

고온상태에서 과도한 신체활동 후 체내 수분, 염분의 손실에 의해 근경련이 유발되는 상태

**원인**

심한 발한으로 인해 급격하게 신체 내 수분과 염분을 잃을 경우 발생된다.

**증상**

다리 및 복부에 통증을 동반한 근수축, 체온은 정상, 축축한 피부

**응급처치**

시원한 장소에서 시원한 물 또는 스포츠 음료를 주면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 수축된 근육을 마사지한다.



## 열탈진(Heat Exhaustion), 열성피로(Heat Fatigue)

### 정의

고온상태에서 체내 수분과 염분의 과도한 손실로 혈류량이 감소되고, 이로 인한 임상 증상이 유발되는 것을 말한다.

### 원인 및 특징

극심한 고온에서 장시간 운동을 하거나 심한 노동으로 수분 손실이 진행되어 혈류량이 감소하지만 피부나 말초로 가는 혈류는 증가하며 생존에 필요한 장기로 가는 혈류는 감소한다.

### 증상

낮거나 정상적인 체온, 차고 축축하며 창백한 피부, 두통, 탈진, 메스꺼움, 현기증과 허약/무력감, 빠르고 약한 맥박 등

### 응급처치

- 1) 시원한 장소로 환자를 옮긴다
- 2) 옷을 느슨하게 해준다
- 3) 젖은 수건으로 열을 증발시킨다
- 4) 의식이 있으면 적은 양의 시원한 음료를 준다

## 열사병(Heat Stroke)

### 정의

고온에 의해 체온조절 중추의 기능이 마비되어 주요장기 손상이 유발되는 것을 말한다.

### 원인 및 특징

고온에 의한 체온조절 중추기능의 마비

### 증상

높은 체온, 붉고 건조한 피부, 의식 소실, 약하고 빠른 맥박, 얇고 빠른 호흡 등

### 응급처치

119에 도움을 요청하며, 그 외의 처치법은 열탈진의 처치와 동일하다.

## □ 동상 및 저체온증

### 동상의 정의

신체의 일부가 언 상태를 말한다.

### 동상의 원인

추위에 신체부위가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며 기온, 노출시간, 바람 등이 주요 유발 요인이다.

## 동상의 종류

- 1) 표재성 동상 : 피부는 손상 되었으나 피부 아래 깊은 조직에는 영향이 없는 상태다.
- 1) 심부 동상 : 피부와 피부 아래 깊은 조직까지 침범한 동상이며 심하면 신체부위를 잃을 수 있다.

## 동상의 증상

동상 부위의 감각 소실, 끈적끈적하고 차가운 피부, 변색된 피부색

## 동상 응급처치법

- 1) 동상 부위를 따뜻하게 한다는 이유로 문지르지 않는다.
- 2) 동상 부위를 37~40도 정도의 물에 피부색이 정상이 될 때까지 담근다. 온도계가 없는 경우 손을 넣어 따뜻하다고 느낄 정도의 물이면 된다.
- 3) 동상 부위는 건조한 무균 붕대로 감고, 손·발가락 사이사이에는 멸균된 솜이나 거즈를 넣고 감는다.
- 4) 물집은 터뜨리지 않고, 신속하게 전문의의 치료를 받도록 한다.

## □ 벌에 쏘였을 때

### 정의

벌의 몸통 부분에 있는 침에 의해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에 보고되는 중독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원인

벌통을 건드린 경우, 요란한 색의 옷을 착용한 경우 등이 있다.

### 증상

보통은 쏘인 자리가 아프고 붓는 정도지만 벌독에 의한 알레르기가 있으면 피부 두드러기, 저혈압, 의식불명, 천식발작, 호흡곤란, 복통 등이 나타나며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벌독 알레기를 유발하는 벌

꿀벌, 말벌, 땅벌 등

### 벌에 쏘인 경우 응급처치

핀셋을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밀어서 제거하며, 벌침 제거 후 냉찜질을 한다. (벌침을 제거할 때에는 독낭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벌독 알레르기 환자의 경우

호흡곤란과 의식장애 발생 시 누운 자세를 유지하면서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충분히 확보한 자세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벌에 쓰이지 않으려면

- 1) 벌을 유인할 만한 향수, 화장품, 요란한 색의 옷을 피한다.
- 2) 벌이 가까이 접근하면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낮은 자세를 취한다.
- 3) 옥외에선 언제나 양말, 운동화를 착용하고, 몸에 맞는 옷을 입지만 원색의 옷은 피한다.

- 독충에 물렸을 때 가장 위험한 경우를 말하며 독충에 의한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전신적인 과민반응 - 두통, 어지럼증, 구토, 복통, 호흡곤란, 경련, 의식저하 등의 쇼크증상이 나타나면 매우 위험하다.
- 과민성 쇼크의 경우 - 급속히 진행되며 1~2시간 이내에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자의 60~80%는 기도가 부어 질식하는 것으로 보고됨.
- 응급처치 - 쇼크 응급처치를 실시하되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 예방 - 평소에 알레르기나 특정물질에 과민반응이 있으면 주변에 알린다.

[출처: 교육부, 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27~128]

## [붙임 3]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 □ 심폐소생술

#### 1. 현장 안전과 반응 확인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구조자는 현장 상황이 안전한지, 감염의 가능성은 없는지를 우선 확인한다.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본다. 의식이 있다면 환자는 대답하거나 움직이거나 신음을 내는 것과 같은 반응을 나타낸다. 확인하는 동안에 쓰러져 있는 환자의 머리나 목의 외상이 의심되면 손상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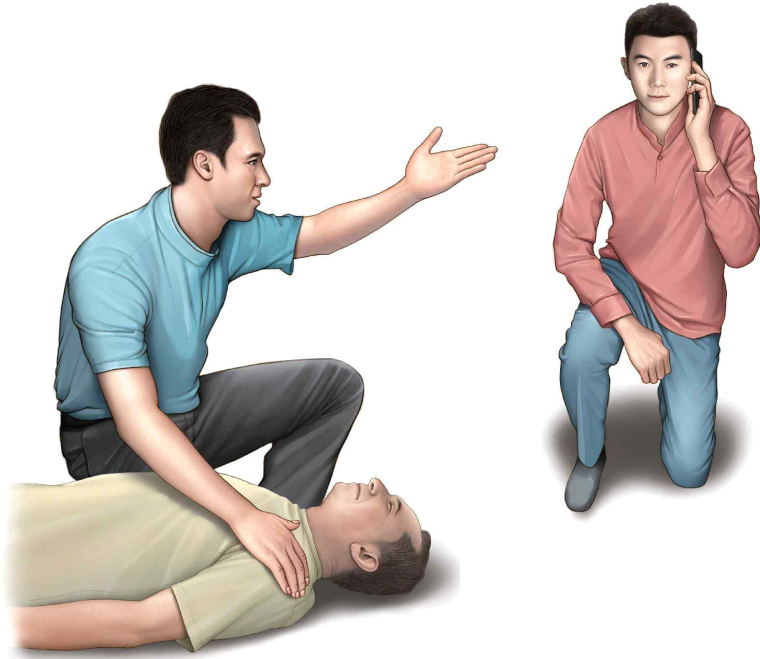
이때 환자의 반응이 없으면 119에 신고한다. 반응이 있고 진료가 필요한 상태이면 119에 연락을 한 다음 환자의 상태를 자주 확인하면서 구급상황(상담)요원의 지시를 따른다.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 2. 응급의료체계 신고

반응이 없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쓰러진 사람이 심장정지 상태라고 판단하고 즉시 119에 신고(혹은 원내 심장정지 코드 방송)하고 자동제세동기를 요청한다. 심장정지 환자를 목격한 경우에는 주변에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하고 다른 사람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도움을 요청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직접 119에 신고한다.



## 3. 호흡 확인

호흡은 119 신고를 먼저 한 이후에 환자의 호흡을 확인해야 한다. 호흡 확인 과정은 매우 어려우며, 특히 심장정지 호흡이 있는 경우 심장정지 상황에 대한 인지가 늦어져 가슴압박의 시작이 지연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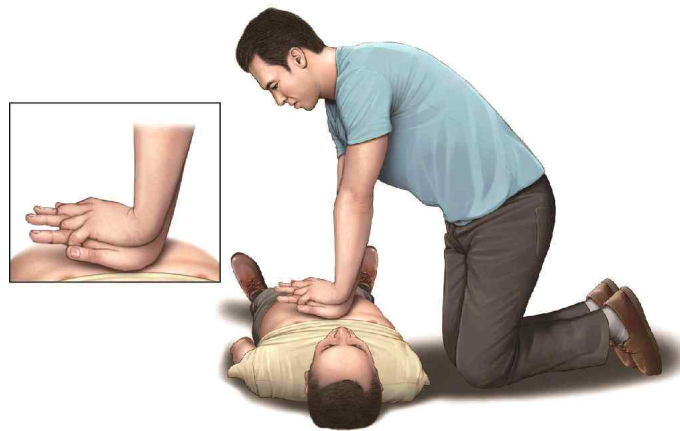
일반인은 반응을 확인한 후 반응이 없으면 119에 신고하고 자동제세동기를 요청한 후 구급상황(상담)요원의 안내에 따라 호흡의 여부 및 비정상 여부를 판별해야 하며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가슴압박을 시작한다.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 4. 가슴압박

가슴압박은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 정중앙(복장뼈의 아래쪽 1/2)에 한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올려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올려서 겹친 뒤 깍지를 낀 자세로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성인 심장정지의 경우 압박 깊이는 약 5cm, 가슴압박의 속도는 분당 100회~120회를 유지한다.

또한, 가슴압박 이후 다음 가슴압박을 위한 혈류가 심장으로 충분히 채워지도록 각각의 가슴압박 이후 가슴의 이완을 최대로 할 것을 제안한다. 가슴압박이 최대한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가슴압박이 중단되는 기간과 빈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성인 심장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2로 시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심폐소생술 시작 1.5~3분 사이부터 가슴압박의 깊이가 약 5cm이므로 2분마다 가슴압박을 교대해 주는 것이 구조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제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성인 가슴 압박법]



[소아 가슴 압박법]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 5. 기도유지 및 인공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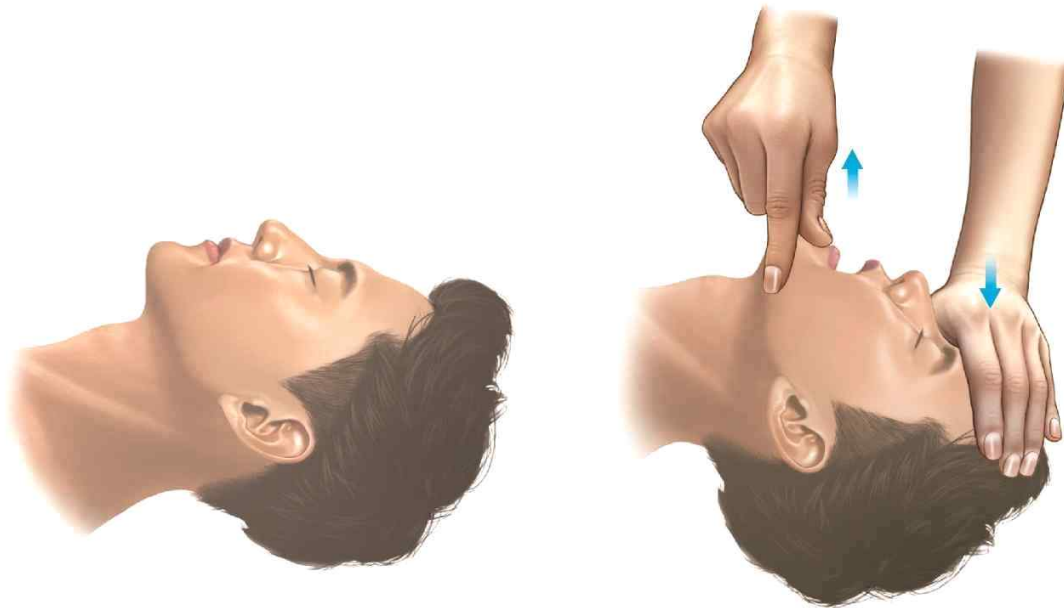
### 1) 기도유지 방법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자신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구조자는 머리기울임-턱들어올리기(head tilt-chin lift) 방법을 사용하여 기도를 개방한다. 이 방법은 한 손을 심장정지 환자의 이마에 대고 손바닥으로 압력을 가하여 환자의 머리가 뒤로 기울어지게 하면서, 다른 손의 손가락으로 아래턱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 턱을 받쳐주어 머리를 뒤로 기울이는 것이다. 이때 턱 아래 부위의 연부조직을 깊게 누르면 오히려 기도를 막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기도가 열리면 환자의 입을 열어 입-입 호흡을 준비한다.

### 2) 인공호흡 방법

인공호흡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1초에 걸쳐 인공호흡을 한다.
- ② 가슴 상승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의 일회 호흡량으로 호흡한다.
- ③ 가슴압박 동안에 인공호흡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④ 인공호흡을 과도하게 하여 과환기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 □ 자동제세동기



① 전원을 켜다



② 두 개의 패드 부착



③ 심장리듬 분석



④ 제세동 시행



⑤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 □ 기도폐쇄(하임리히법)

순서	처치 방법
1	환자에게 “목에 뭐가 걸렸나요?”라고 묻고, 말을 하지 못한다면 기도 폐쇄이므로 즉각 처치 시행
2	환자가 기침을 크게 한다면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스스로 기침을 못하는 성인이나 1세 이상의 소아 환자라면 즉시 등 두드리기 시행
3	등 두드리기 5회 연속 시행 후 효과가 없다면 5회의 복부 밀어내기(하임리히 법) 시행
4	기도폐쇄 징후가 해소되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기 전까지 계속 등 두드리기와 복부 밀어내기 5회씩 반복



등 두드리기



복부 밀어내기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 □ 골절

### 골절의 형태별 분류

- 1) 분쇄골절 - 골격이 손상되어 두 개 이상의 골절 파편으로 나누어진 경우  
(자동차 사고 등에 많음)
- 2) 나선골절 - 골절이 뼈 둘레를 돌면서 골절된 형태(스키사고 등에 많음)
- 3) 사선골절 - 뼈의 축에서 사선으로 골절된 형태  
(뼈에 약간 또는 중간 정도의 압력이 가해진 경우)

## 골절의 원인별 분류

- 1) 외상성 골절 - 일반적인 골절, 정상적인 뼈가 외력으로 인해 발생
- 2) 특발성 골절 - 질병으로 인해 변화된 특정부위의 뼈가 약해져 외력 없이도 근수축에 의해 이상골절이 발생한 상태. 병적 골절이라고도 함
- 3) 피로성 골절 - 일정 외력이 장기간 반복되어 뼈에 누적되면 피로현상으로 변질되는 현상

## 신체 부위별 골절처치

### 1) 빗장뼈(쇄골) 골절

#### 증상

- 일반적인 골절 증상이 나타난다.
- 대부분 부러진 부분이 만져진다.
- 팔을 어깨위로 들지 못한다.
- 부상당한 어깨가 반대편보다 쳐진다.

#### 응급처치

- 부상당한 쪽의 손을 팔꿈치 보다 높게 하여 반대쪽 어깨에 되고 삼각건을 댄다.

### 2) 위팔뼈(상완골) 골절

#### 증상

- 골절의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 어깨관절의 운동을 할 수 없다.

#### 응급처치

- 팔꿈치를 'ㄴ'자'로 구부린 후 어깨부터 팔꿈치 길이의 부목을 댄다.
- 삼각건을 부러진 뼈 위쪽과 아래쪽에 하나씩 묶는다.
- 삼각건으로 팔걸이를 만든다.
- 삼각건으로 팔 전체를 고정한다.
- 부목이 없을 시 붕대로 팔 전체를 가슴에 대고 감는다.

### 3) 팔꿈치뼈(주관절) 골절

#### 증상

- 관절부위가 붓고 팔을 구부릴 수 없다.

#### 응급처치

- 겨드랑이부터 손가락까지 부목을 댄다.
- 팔꿈치가 구부러져 있으면 팔을無理하지 않게 끌어올리고 팔을 몸체에 대고 삼각건을 고정시킨다. 팔과 몸을 고정할 때는 골절부위를 건드리거나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 구부러진 팔을無理하게 펴지 않는다.
- 이송 시 삼각건으로 허리를 묶어 고정한다.

### 4) 아래팔뼈(전완골) 골절

### 증상

- 아래팔 뼈 두 개가 모두 부러질 경우 골절의 일반적 증상이 나타난다.  
(아래팔 뼈 전완의 뼈 한 개 또는 두 개가 부러질 수 있다)
- 한 개만 부러졌거나 손목 뼈마디가 부러졌을 때는 부상 부위를 움직이기 어렵다.

### 응급처치

- 편안한 자세로 안정을 취하게 한다.
- 팔꿈치부터 손가락까지 길이의 부목을 손바닥 쪽에 댄다.
- 두 개의 삼각건을 골절부위 위쪽부터 맨다.
- 손바닥이 가슴 쪽을 향하도록 하고, 팔꿈치 보다 약 10cm정도 높게 한 후 삼각건으로 고정시킨다.

쇄골(빗장뼈) 골절	주관절(팔꿈치골절)	전박골(아래 팔뼈 골절)
		

출처: 응급처치법(대한적십자사)  
[출처: 교육부, 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06~108]

## □ 전기화상

### 특징

- 1) 화상의 크기가 작아도 신체 내부의 심한 손상이 동반되며, 특히 심장은 전기에너지에 의해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
- 2) 전기가 신체에 접촉하면 전기가 신체내부로 유입되고 다른 부위로 나오게 되는데 전기가 들어가고 나온 곳에 화상을 입고 전기가 나오는 곳의 상처가 깊고 크다.

### 전기에 의한 화상 응급처치 방법

- 1) 구조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현장의 모든 전원을 차단 후, 접근해야 한다.
- 2) 필요시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 쇼크, 화상, 골절 처치 등을 실시한다.
- 3) 처치 - 119를 통해 화상전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전문치료를 받도록 한다.

## □ 저체온증

저체온증의 정의

내·외부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저체온증의 원인

찬물 속에 오래 있거나 젖은 의복을 장시간 입고 있을 때, 난방시설이 없는 곳에 장시간 체류 등 장시간 낮은 온도에 노출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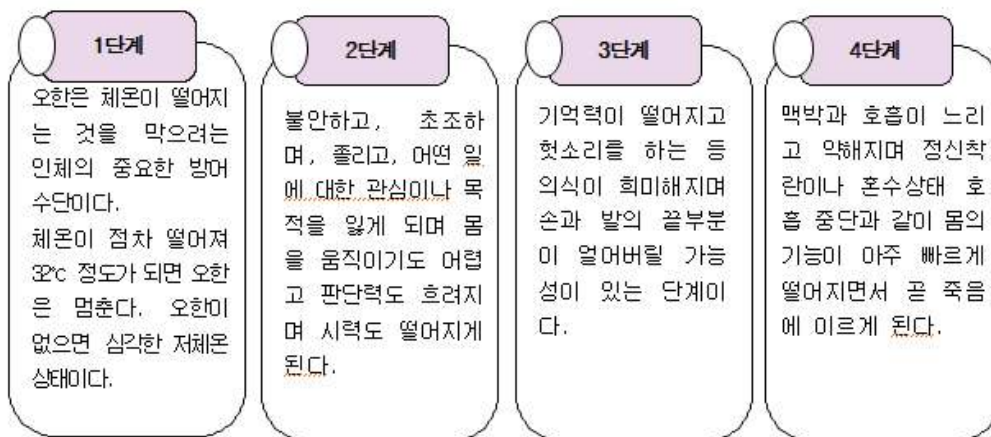
저체온증의 증상

- 1)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다.
- 2) 체온이 떨어지면서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박동하며 심하면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 3) 온몸을 떠다.(증상이 진행됨에 따라 떨림은 없어진다.)
- 4) 몸이 저리다.
- 5)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한다.
- 6) 무감각해지고 의식상태가 희미해진다.

저체온증의 응급처치법

- 1) 신속히 환자상태를 파악하여 치명적인 상태(호흡정지, 심장마비) 유무를 확인한다.
- 2) 필요 시 119에 도움을 요청한다.
- 3) 젖은 의복은 벗기고 환자의 몸을 건조하게 유지한다.
- 4) 따뜻한 장소로 옮겨 몸을 따뜻하게 한다. 단, 갑자기 체온을 높이지 않는다.
- 5) 저체온증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 필요 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구조대원을 기다린다.

저체온증의 단계



## 저체온증의 온도별 변화



### 저체온증 환자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갑작스럽게 체온을 변화시켜 환자의 떨림 증상을 억지로 중지시키려 하지 않는다
- 32°C 이하의 저체온 환자에게 뜨거운 물병이나 핫팩 등으로 급속 가온치료를 하지 않는다. 급속가온은 말초의 차가운 혈액을 순환시켜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다.

[출처: 교육부, 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20~122]

### 학교안전사고 발생 신고서

일반사항	학교명					
	사건번호				보고일자	
	사고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년반	사고자구분
지도교사		작성자	성명		연락처	

사고관련자	설명		
	학년반		
	사고관련자 구분		

사고내용	사고일자		사고부위	
	사고시간		사고당시활동	
	사고장소		사고의도설	
	사고형태			
	사고매개물			

사고개요

지도 내용 및 안전교육 내용

사고발생 후 긴급 조치 내용

그 밖의 사항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신명의 기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학교시설 안전관리 업무 관련 점검표

1. 매월 안전점검의 날 체크리스트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 73조의6)

### 1. 교실/특별교실

위치 : \_\_\_\_\_ 학년 \_\_\_\_\_ 반 \_\_\_\_\_      검사년도 : \_\_\_\_\_      점검자 : \_\_\_\_\_

※ 표시: ○ = 상태 좋음 / △ = 전문점검요구 / X = 이상있음 / - = 해당없음  
 ※ 빈칸에 점검자가 표시, 회색칸에 특이사항/ 조치사항을 담당자가 기록

분 야	점검항목	월	월	월
기록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리의 균감/깨진</li> </ul>	○	△/ 청소불량	X, 창문1개 깨진 12/10 교체함
1. 교실 바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교실 바닥의 안전상태(바닥균열/마감재 탈락 및 노후화, 보행장애물 여부)</li> </ul>			
2. 교실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벽체 안전상태(균열 및 기울임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벽체부착물의 안전상태(칠판, 게시판, 선풍기 등의 고정상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콘센트의 안전상태(먼지/탄자국, 고정불량, 문어발식 사용여부)</li> </ul>			
3. 교실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출입문 안전상태(레일, 손끼임 방지, 부착물 등 상태)</li> </ul>			
4. 교실 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창호 안전상태(유리, 추락방지 보호시설의 고정상태)</li> </ul>			
5. 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천장의 마감재 안전상태(처짐, 파손, 누수 흔적 등 상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천장 부착물 안전상태(전등, 선풍기, 냉방설비, 빔프로젝트 고정 상태)</li> </ul>			
6.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책걸상 관리상태(파손, 동작 등)</li> </ul>			
기타사항:				

※ 교무실, 행정실, 체육관, 기숙사 등은 위 서식을 준용

## 2. 공용공간 (현관/계단/화장실/옥상/외벽)

위치 : (예시) 본관동

검사년도 : \_\_\_\_\_

점검자 : \_\_\_\_\_

※ 표시: ○ = 상태 좋음 / △ = 전문점검요구 / X = 이상 있음 / - = 해당 없음

※ 빈칸에 점검자가 표시, 회색칸에 특이사항/ 조치사항을 담당자가 기록

분 야	점검항목	월	월	월
기록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리의 균열/깨짐</li> </ul>	○	△/ 청소불량	X, 창문/개 깨짐 12/10 교체함
1. 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현관 출입문 상태(손끼임방지, 시건장치, 문짝의 고정)</li> </ul>			
2. 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계단 미끄럼방지 장치(논슬립) 탈락상태</li> <li>▪ 2)난간의 고정 상태</li> </ul>			
3. 화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내부 칸막이 고정/파손 상태</li> <li>▪ 2)타일 탈락 상태</li> <li>▪ 3)위생기구 상태(파손, 동작 등)</li> </ul>			
4. 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옥상 출입문 상태</li> <li>▪ 2)옥상 난간대 고정 상태</li> <li>▪ 3)옥상 바닥 및 배수로(물받이)의 퇴적물 청소 상태</li> </ul>			
5. 외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선홍통 안전상태(부착상태 및 청소여부)</li> <li>▪ 2)간판,전광판 등 부착상태</li> </ul>			
기타사항:				



### 3. 외부공간 (운동장/담장/기타)

위치 : (예시) 운동장

검사년도 : \_\_\_\_\_

점검자 : \_\_\_\_\_

※ 표시: ○ = 상태 좋음 / △ = 전문점검요구 / X = 이상 있음 / - = 해당 없음

※ 빈칸에 점검자가 표시, 회색칸에 특이사항/ 조치사항을 담당자가 기록

분 야	점검항목	월	월	월
기록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지의 균갈/깨진</li> </ul>	○	△/ 청소불량	X, 창문/개 깨진 12/10 교체함
1. 운동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운동장 전반 평활 상태(패임, 장애물, 트랙 주변 단차이 메꾸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운동장 배수로 안전상태(파손, 패임, 퇴적물의 청소상태)</li> </ul>			
2.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옹벽, 석축, 교문, 담장의 이상 유무(균열, 처짐, 기울어짐 등)</li> </ul>			
3.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CCTV안전상태(파손, 고정, 작동상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맨홀 뚜껑 탈락, 파손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의자, 가로등, 표지판, 식수대 고장 또는 파손</li> </ul>			

기타사항:

## 4. 소방/전기/승강기

위치 : (예시) 본관동

검사년도 : \_\_\_\_\_

점검자 : \_\_\_\_\_

※ 표시: ○ = 상태 좋음 / △ = 전문점검요구 / X = 이상 있음 / - = 해당 없음

※ 빈칸에 점검자가 표시, 회색칸에 특이사항/ 조치사항을 담당자가 기록

분 야	점검항목	월	월	월
기록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리의 균갈/깨진</li> </ul>	○	△/ 청소불량	X, 창문1개 깨진 <i>12/10 교체함</i>
1. 소방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소화 및 감지설비 안전상태(소화기,소화전,수신반,감지기 동작 등 상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피난 및 방화설비 안전상태(피난구,유도표시 및 방화문 동작, 장애물 등 상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소방점검 용역업체 점검상태(전월의 지적사항 조치여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소방차 진입로 상태(장애물 존재 등)</li> </ul>			
2. 전기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조명설비 안전상태(체육관 포함, 동작·파손·고정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전열설비 안전상태(동작, 파손여부 및 문어발식 사용, 개인전열기 사용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관리실의 안전상태(전기실, EPS실, 경고표시-위험 및 접근금지 상태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전기점검 용역업체 점검상태(전월의 지적사항 조치여부 등)</li> </ul>			
3. 승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승강기 등 안전상태(승강기,덤웨이터,비상통화장치 등 동작/파손 등 상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정기점검 용역업체 점검상태(전원의 지적사항 조치여부 등)</li> </ul>			
기타사항:				

## 5. 기계/가스

위치 : (예시) 본관동

검사년도 : \_\_\_\_\_

점검자 : \_\_\_\_\_

※ 표시: ○ = 상태 좋음 / △ = 전문점검요구 / X = 이상 있음 / - = 해당 없음

※ 빈칸에 점검자가 표시, 회색칸에 특이사항/ 조치사항을 담당자가 기록

분 야	점검항목	월	월	월
기록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리의 균갈/깨진</li> </ul>	○	△/ 청소불량	X, 창문/개 깨진 12/10 교체함
1. 기계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냉난방설비 안전상태(실내기/실외기 동작/파손/부식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급수 및 급탕설비 안전상태(펌프,보일러,세면기 등의 동작/파손/부식/누수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환기설비 안전상태(팬,덕트,환풍기 등의 동작/파손/부식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관리실의 안전상태(기계실,보일러실,PS실,경고표시-위험 및 접근금지 등)</li> </ul>			
2. 가스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가스설비 안전상태(용기,배관,경보 및 차단설비 등 동작/파손/부식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관리실의 안전상태(가스보관실,배관분기장소,경고표시-위험 및 접근금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가스설비 정기점검 상태</li> </ul>			

기타사항:

## 6. 통학로/통학버스

위치 : \_\_\_\_\_      검사년도 : \_\_\_\_\_      점검자 : \_\_\_\_\_

※ 표시: ○ = 상태 좋음 / △ = 전문점검요구 / X = 이상있음 / - = 해당없음

※ 빈칸에 점검자가 표시, 회색칸에 특이사항/ 조치사항을 담당자가 기록

분 야	점검항목	월	월	월
기록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리의 균갈/깨진</li> </ul>	○	△/ 청소불량	x, 창문1개 깨진  12/10 교체함
1. 통학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교내 차량 통행로 및 통학로 안전상태 (인도와 차도 구분, 도로파손, 보행장애물 상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학교앞 통학로/도로 안전상태(보행장애물, 도로/보도블록/과속방지턱 상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학교앞 교통시설물 안전상태(교통표지판 시야확보,블록거울,안전휀스 상태)</li> </ul>			
2. 통학 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어린이통학버스 등록차량여부 및 차량 앞유리에 통학버스 신고필증 부착 상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내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 또는 안전 시트의 설치 및 정상 작동 상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광각 후사경 설치유무(의무사항) 및 고 정상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량 내 날카로운 곳 또는 불필요한 물 건의 존치 상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정기적 차량 안전점검 실시 및 기록상태, 안전수칙 부착여부, 안전교육 실시여부</li> </ul>			

기타사항:

## 7. 어린이놀이시설 및 체육시설

위치 : \_\_\_\_\_    검사년도 : \_\_\_\_\_    점검자 : \_\_\_\_\_

※ 표시: ○ = 상태 좋음 / △ = 전문점검요구 / X = 이상있음 / - = 해당없음

※ 빈칸에 점검자가 표시 , 회색칸에 특이사항/ 조치사항을 담당자가 기록

분 야	점검항목	월	월	월
1. 어린이 놀이 시설 (초등 학교)	▪ 1)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한 안전점검/사고보고서/결과대장 관리여부	※ 기 사용중인 양식대로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는 것으로 같음. (참조: 학생생활안전과-621(2016.1.22.) 201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계획)		
	▪ 2)부적합 시설에 대한 이용금지조치 및 수리이력 관리대장 작성여부			
분 야	점검항목	월	월	월
2. 체육 시설	▪ 1)체육시설의 근본적 낙후/파손상태			
	▪ 2)체육시설의 금이 가거나 깨진부위 존재			
	▪ 3)금속재질 체육시설의 녹발생, 페인트칠 벗겨짐 여부			
	▪ 4)체육시설내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등 이험물질 존재			
기타사항:				

## 8. 급식실

위치 : \_\_\_\_\_

검사년도 : \_\_\_\_\_

점검자 : \_\_\_\_\_

※ 표시: ○ = 상태 좋음 / △ = 전문점검요구 / X = 이상있음 / - = 해당없음

※ 빈칸에 점검자가 표시, 회색칸에 특이사항/ 조치사항을 담당자가 기록

- 일일 위생안전 점검표, 주간 청소점검표 작성 및 게시여부

### 청소 점검표

점검기간 : 20 . . . . . ~ . . . . .

확인일자 : 20 . . . . . 년 . . . . . 월 . . . . . 일 (인)

구분		담당자	26	27	28	29	30	지적사항	조치사항	비고	
			일	화	수	목	금				
매일	음식 조리 기구	조리기계(취사기, 국솥 등)									
		조리대(김수대, 작업대, 세정대등)									
		식판, 국그릇, 수저, 컵, 도마, 칼, 기타 집기류									
	청소세척 도구, 위생복	행주, 고무장갑, 수세미,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앞치마 등									
	음식실 내부	바닥									
	하수구, 트랜지	하수구(배수구), 트랜지									
주별	월	가스실 / 음식소주변									
	화	식당 식탁 및 의자 닦기									
	수	유리창청소(1.3주)/ 외부그리스트랩(2.4주)									
	목	냉장고(조리실, 워크인, 우유보관용)									
	금	벽, 배기후드(1.3주)/ 조리실 대청소(2.4주)									
월 별	식품창소 대청소										
	벽										
	가스배관 및 밸브(이상여부확인)										
	천장										
연간	*개학 및 방학대비 대청소(연4회)										
	*에어컨 점검 및 필터청소(하절기)										

\* 청소시 유의 사항 : 전열기구의 코드를 뽑거나 차단기를 내려 감전사고에 유의한다.  
음식물의 청소 오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조치 후 청소한다.

※ 기 사용중인 양식대로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는 것으로 같음.

## 학교급식 위생·안전 1일 점검표

2017년 월 일 요일 날씨 : 점검시간 :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고 (불량시 조치사항)
가스	1. 배관이나 호스가 손상된 곳은 없는가?	양호	<input type="radio"/>	불량	* 2번은 주 1회 점검
	2. 배관 호스의 연결부 비눗물 점검결과 누출된 곳은 없는가?	양호	<input type="radio"/>	불량	
	3. 작업이 끝난 후 각각의 기기의 가스밸브와 중앙 밸브는 꼭 잠갔는가?	양호	<input type="radio"/>	불량	
	4. 가스경보기의 작동상태는 어떠한가?	양호	<input type="radio"/>	불량	
전기	5. 전기배전반의 누전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양호	<input type="radio"/>	불량	
	6. 환풍기 작동상태는 어떠한가?	양호	<input type="radio"/>	불량	
	7. 작업이 끝난 후 전채 전원스위치를 OFF 시키고 모 든 기기의 전원플러그를 모두 빼었는가?	양호	<input type="radio"/>	불량	
화재 예방	8. 소화기는 제자리에, 눈에 띄게 놓여졌는가?(위치표시 여부)	양호	<input type="radio"/>	불량	* 주1회 소화기 내용물이 균지 않도록 관리.
	9. 소화기 충전상태(충전표시누급 확인)	양호	<input type="radio"/>	불량	
안 전	10. 문단속, 정검결과?	양호	<input type="radio"/>	불량	
	11. 전기 및 가동되는 기기는 없는가?	양호	<input type="radio"/>	불량	
식품 창고	12. 식품창고의 정리 및 청소 상태는?	양호	<input type="radio"/>	불량	* 부식창고 창소는 1일 1회 실시
	13. 식품창고의 환기 실시 여부?	양호	<input type="radio"/>	불량	
화장실 휴게실	14. 화장실내 수건,비누,화장지,휴지통 준비 및 관리상태는?	양호	<input type="radio"/>	불량	
	15. 화장실(사위실) 정리상태 및 청소 상태?	양호	<input type="radio"/>	불량	
	16. 휴게실 정리 및 청소 상태?	양호	<input type="radio"/>	불량	
	17. 위생복 및 개인사물함 관리 상태?	양호	<input type="radio"/>	불량	
냉장고  냉동고	18. 냉장고 보관 식품명 : 1) 반찬냉장고	양호	<input type="radio"/>	불량	* 냉장고 보관식품의 밀봉 상태 확인  * 원재료와 조리된 음식의 냉장고내 분리저장 여부 확인
	2) 채소냉장고	양호	<input type="radio"/>	불량	
	3) 계란냉장고	양호	<input type="radio"/>	불량	
	4) 육어류냉장고	양호	<input type="radio"/>	불량	
	19. 냉동고 보관 식품명	양호	<input type="radio"/>	불량	
위생 관리	20. 조리실 바닥은 청결히 청소 되었는가?	양호	<input type="radio"/>	불량	
	21. 위생화 세척 및 정리·관리 상태는?	양호	<input type="radio"/>	불량	
	22. 배수구 청소 상태는?	양호	<input type="radio"/>	불량	
	23. 조리대 및 선반 물기 제거 상태는?	양호	<input type="radio"/>	불량	
기타	24. 청소기구(빗자루,마포걸레,수세미 등) 정리 상태는?	양호	<input type="radio"/>	불량	
	25. 배기후드의 환풍기의 상태는 양호한가?	양호	<input type="radio"/>	불량	
	26. 조리기계,기구 중 수리를 요하는 것은 없는가?	있음		<input type="radio"/>	

점검자(조리사) : ooo (인), 확인자(영양사) : ooo (인)

## 9. 실험실

위치 : \_\_\_\_\_                                      검사년도 : \_\_\_\_\_                                      점검자 : \_\_\_\_\_

※ 표시: ○ = 상태 좋음 / △ = 전문점검요구 / X = 이상 있음 / - = 해당 없음

※ 빈칸에 점검자가 표시, 회색칸에 특이사항/ 조치사항을 담당자가 기록

- 실험실 안전관리 점검표 월 1회 작성 및 게시여부

※ 기 사용중인 양식대로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는 것으로 같음.

영역	점검내용	점검 결과 (이상/유무)
<p>&lt;양식 1&gt; 과학실험실 안전 점검표</p> <p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2em;">&lt;실험실 안전관리 점검표&gt;</p> <p>점검일 : 20    .    .                                      점검자 : 과학부장    성명                                      (인)</p> <p style="padding-left: 150px;">확인자 : 교    감                                      성명                                      (인)</p>		
안전관리 계획	1. 실험실 안전관리에 대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2. 실험실 안전관리 자체 점검표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월 1회 이상 권장) 점검하며, 점검표를 누계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안전교육	3. 사전 안전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4. 실험실 내 안전 수칙과 대처 요령이 게시되어 있는가?	
	5. 교육과정 내에 안전교육을 위한 별도의 시간이 편성되어 있는가?	
	6. 실험실 종사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안전관리	7. 실험복, 마스크, 보안경, 장갑 등 안전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가?	
	8. 실험실 내에 소화기, 방화사 등이 비치되어 있는가?	
	9. 전기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10. 비상대피로가 확보되어 있는가?	
시약관리	11. 밀폐 시약장이 확보되어 있고 환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12. 시약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시약 보관 상대는 안전한가?(시건장치 유무 점검) · 독극물은 특별 관리되고 있는가?(이중 시건, 별도 보관)	
	13. 약품출납대장이 기록되고 있는가?	
	14. 사용한 약품은 지정된 방법에 따라 폐기하고 있는가?	
	15. 관리자 외 학생, 외부인 등의 접근이 통제되고 있는가?	
시설· 설비 및 기타	16. 밀폐 시약장 시건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17. 국소매기장치(흡후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18. 도난방지 시설 및 시건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19. 실험실 정리 정돈 및 청결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가?	
	20. 실험실 안전사고를 대비한 비상연락망이 구축되어 있는가?	
<p>☞ 월 1회 자체 점검 후 점검표를 작성하여 과학실에 게시</p>		



## 2.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점검표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 해당칸에 √를 표시

날짜 : 2023년 월 일		점검책임자 :	소속 :		
분야	안전기준	양호	불량	불량사유	
건축물	1. 건축물 주변: 학생들의 등·하교 길에 안전한 보행과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차량이 통행하는 교문 및 도로에는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한다. 나.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경계 턱이나 가드레일(guardrail) 등을 설치한다.		√	보차도 미 구분	
	2. 교실바닥 가. 교실바닥은 튀어나온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환기구, 시스템박스 등을 설치할 경우 주변 바닥과 같은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	√	높이 불량	
	3. 교실벽 가. 칠판을 설치하는 벽면은 칠판이 떨어지거나 엎어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석고보드 등의 건식 벽체, 이동식 벽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칠판 등의 부착물을 붙일 수 있도록 보강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교실에 노출되는 벽 모서리나 기둥 모서리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한다. 라.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 밑 또는 바로 상부 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4. 교실문 가. 교실문은 될 수 있는 대로 미닫이 구조로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교실문의 유효 폭은 90cm 이상으로 한다. 2) 미닫이 구조로 할 경우에는 손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3) 미닫이 구조 문의 바닥 레일 부분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한다. 4) 미닫이 구조 문의 바닥 문턱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한다. 5) 반대편이 보일 수 있도록 일정 높이에 고정된 유리창을 설치한다. 나. 교실문을 여닫이 구조로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반대편이 보일 수 있도록 일정 높이에 고정된 유리창을 설치하며, 유리는 충격에 의한 관통 및 파손 시 파편의 비산(飛散)이 없도록 한다. 2) 도어체크(문이 자동으로 천천히 닫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나 경첩 등을 설치하여 문이 닫히는 시간을 여유 있게 한다. 다만, 목재문의 경우에는 재질을 고려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한다. 4) 여닫이 구조 문의 바닥 문턱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한다. 다. 피난로에 있는 모든 문은 열었을 때 피난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5. 교실 창호				

<p>가. 창호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창호의 틀 두께는 벽체의 두께와 같거나 더 얇게 한다.</li> <li>2) 유리는 강도가 충분한 것을 사용한다.</li> <li>3) 유리와 창호 간에 이격(離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li> <li>4) 얇은 유리는 필름 부착 등의 조치로 파손 시 파편 비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li> </ol> <p>나. 외부 창호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창대의 높이가 실내바닥면에서 1.2m 이하인 경우에는 창호 외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해당층이 지표면에 접하는 경우 등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추락방지 기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li> <li>2) 외부 창호가 바닥보다 아래에 설치되거나 커튼월(칸막이 구실만 하고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바깥벽을 말한다)로서 바닥까지 유리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li> </ol>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p> <p>○</p> <p>○</p> <p>○</p> <p>○</p> <p>○</p>
<p><b>6. 특별교실</b></p> <p>가. 화학약품을 사용하거나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특별교실은 바닥 표면을 내화학적성(耐化學性)을 지닌 제품이나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난연재료(難燃材料) 이상으로 마감하여야 한다.</p> <p>나. 특별교실과 준비실 사이에는 교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창을 두어야 하며 위험성이 있는 실험재료나 기구 등은 준비실에 교사가 관리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p> <p>○</p>
<p><b>7. 복도</b></p> <p>가. 복도와 교실(특별교실을 포함한다) 등의 바닥은 높이 차이를 두지 말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교실 등의 내부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한다.</p> <p>나. 복도 벽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복도에 노출되는 벽 모서리나 기둥 모서리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한다.</li> <li>2) 복도의 바닥면은 튀어나온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li> <li>3) 복도에 독립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을 확보한다.</li> </ol>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p> <p>○</p> <p>○</p> <p>○</p> <p>○</p>
<p><b>8. 계단</b></p> <p>가.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계단 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왼쪽 회전 계단 형태로 한다.</li> <li>2) 계단을 갈음하여 설치하는 경사로의 표면은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한다.</li> </ol> <p>나. 계단 단 높이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철판(계단 한 단의 수직면을 말한다) 높이는 일정하게 유지한다.</li> <li>2) 철골조의 경우 계단에는 철판을 반드시 설치한다.</li> </ol> <p>다. 계단 단 너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초·중등학교의 단 너비는 충분히 확보한다.</li> <li>2) 디딤판의 너비와 철판의 높이는 고르게 한다.</li> </ol>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p> <p>○</p> <p>○</p> <p>○</p> <p>○</p> <p>○</p> <p>○</p> <p>○</p>

	<p>라. 계단참의 너비는 최소 150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마. 계단 난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1) 높이가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을 설치한다.</p> <p>2) 너비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한다.</p> <p>3) 계단이 끝나는 수평 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설치한다.</p> <p>4) 계단 난간의 높이는 계단으로부터의 높이에 85cm 이상이 되도록 한다.</p> <p>5) 계단 난간의 난간살은 난간이 수직재인 경우에는 디딤판 한 단에 2개 이상으로 하고, 수평재인 경우에는 15cm 이하로 한다(난간의 흔들림이 5mm 이내가 되도록 한다).</p> <p>6) 손잡이는 벽으로부터 5cm 이상 떨어져 설치한다.</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p><b>9. 화장실:</b> 화장실 바닥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가.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다.</p> <p>나. 배수는 항상 잘 되는 구조로 하여 바닥이 항상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p> <p>다. 난방기는 통행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받침대를 만들어 설치한다.</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p><b>10. 그 밖의 사항</b></p> <p>가. 현관 출입문(유리문)은 손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문은 파손이 어려운 강화유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p> <p>나. 천창(天窓)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새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유리는 단열 기능이 있고 충격에 의한 관통 및 파편 비산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b>전기 시설</b>	<p><b>1. 수변전설비(受變電設備)</b></p> <p>가. 수변전설비를 옥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1) 기기 주위에는 유지관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p> <p>2)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온이 상승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기구멍이나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p> <p>3) 습기나 이슬 맺힘 등에 의한 절연 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p> <p>나. 수변전설비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1) 지반이 주위보다 높고, 배수가 잘 되는 위치에 설치한다.</p> <p>2) 전기실에 위험 표시를 하고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며, 특히 학생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p><b>2. 분전반:</b> 분전반(分電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가. 구조가 튼튼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p> <p>나. 분전반은 기판(基板)에 과전류차단기·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붙여 보호판 등에 의하여 조작하기에 안전한 구조로 한다.</p> <p>다. 분전반 상자를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한다.</p> <p>라. 분전반에 시설하는 기구와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p><b>3. 전기배선:</b> 전기배선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가.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벗겨진 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p>나. 배선에 사용되는 절연 전선·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거죽을 씌운다.</p> <p>다.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자기저항·절연저항·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한다.</p> <p>라.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전기기계 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접속이 완전하여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한다.</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p><b>4. 조명설비:</b> 조명설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가. 등(燈)기구의 설치는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 기구 몸체의 교체와 철거가 쉽도록 설치한다.</p> <p>나. 소켓은 규격에 맞고 진동·충격 등에 의하여 등의 탈락이나 파손 등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p> <p>다. 옥외에 시설하는 전구는 빗방울로 인하여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갓이나 글로브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먼지·벌레·물방울 등이 등 기구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p> <p>라. 조명설비는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붙인다.</p> <p>마. 화장실이나 식당 등 습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될 수 있는 대로 방수형으로 한다.</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p><b>5. 전열설비:</b> 콘센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가. 기둥이나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 벽의 두께, 교구(敎具) 배치, 칸막이 등을 고려한다.</p> <p>나. 바닥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구의 배치, 예상 통로 등을 고려하며, 물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다. 콘센트 설치의 일반적인 높이는 벽인 경우에는 바닥 위 300mm, 작업대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대 위 100~300mm 정도로 하고, 기계실·전기실·주차장의 경우는 바닥 위 500~1,000mm 정도로 한다.</p> <p>라. 한 개의 전용회로에 연결되는 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한다.</p> <p>마. 전기 용량이 30 ~ 50A 이상인 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콘센트는 전용회로로 구성한다.</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b>설비 시설</b>	<p><b>1. 냉난방설비</b></p> <p>가. 교실의 실내 온도 및 습도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일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p> <p>나. 난방 기구의 표면 온도가 높아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다. 천장이나 벽에 설치하는 선풍기는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p><b>2. 환기시설</b></p> <p>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 환기 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나. 실험실 후드 등에서 배출되는 공기는 재순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다. 실험실 후드나 국소 배기설비의 덕트는 불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p> <p>라. 실험실 배기설비의 덕트 속도는 배기설비 내에서 물질의 퇴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히 빨라야 한다.</p> <p>마. 후드·후드 배기설비·국소 배기설비는 매년 1회 이상 점검·시험하여야 한다.</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p><b>3. 급배수설비 등</b></p> <p>가. 급수시설·설비는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물탱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연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p> <p>나.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의 수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p> <p>다. 급탕(給湯)의 경우 학생 및 교사의 화상 사고를 고려하여 용도별로 적절한 급탕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p> <p>라. 모든 위생 기구는 적당한 수량으로 사용 목적에 적합한 합리적인 간격과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소방 시설	<p><b>1. 자동화재탐지설비 등</b></p> <p>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비상경보설비의 작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p> <p>나. 감지기는 벽이나 보(洑)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p> <p>다. 실내에는 그 용도(교실·합숙소·급식실 등)에 적합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p><b>2. 옥내소화전설비 등</b></p> <p>가. 소화기는 교실에 한 군데 이상, 복도 및 계단에는 보행거리 20m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급식실·보일러실 등 발화위험성이 높은 실내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p> <p>다. 옥내소화전설비는 각 부분으로부터 방수구까지의 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는 각 부분을 유효하게 방수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p><b>3. 피난설비</b></p> <p>가. 유도등 전원배선을 전용으로 하고, 비상전원(축전지)은 유도등을 최소 20분간 동작시킬 수 있어야 한다.</p> <p>나. 비상구 유도등을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30m 거리에서 문자와 색채를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p> <p>다.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며, 통로 유도등은 바로 아래에서 0.5m 떨어진 지점에서 1룩스(Lu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가스 시설	<p><b>1. 저장시설:</b>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를 설치할 경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가. 용기 보관실은 통풍이 잘 되게 한다.</p> <p>나. 용기 보관실 주위에서는 화기(火器) 취급을 금지한다.</p> <p>다. 경계 표지는 출입구 등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p> <p>라. 용기 보관실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하여 빗물 등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p> <p>마. 용기 보관실의 출입문은 잠금장치를 설치한다.</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p><b>2. 배관:</b> 가스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가. 건축물 내의 배관은 단독 피트 내에 시공하거나 노출하여 시공한다.</p> <p>나. 건축물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 및 부식 방지 피복 조치를 한다.</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다. 배관용 호스와 중간밸브 및 연소기와의 접속 부분은 호스밴드 등으로 견고하게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b>3. 가스 기기:</b> 가스 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가스온수기나 가스보일러는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나. 배기통의 재료는 불연성 재료로 하고, 배기통이 가연성 물질로 된 벽 또는 천장 등을 통과할 때에는 금속 외의 불연성 재료로 단열조치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다. 자연배기식 반밀폐형 및 밀폐형 연소기의 배기통 끝은 배기가 방해되지 아니하는 구조이고, 장애물이나 바깥 공기의 흐름에 의해 배기가 방해 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라. 가스 기기가 설치된 공간에는 환풍기나 환기구를 설치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b>실험 실습 시설</b>	<b>1. 실험실습 설비 및 비품</b>			
	가. 취급주의를 요하는 실험기구·전기기기·화공약품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취급주의 안전표시를 붙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나. 실험실습대와 실험공구는 외관이나 기능이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다. 인화성 물질(알코올·가스 등)을 사용하는 실험실은 환풍이 잘 되어야 하고, 항상 소화기와 모래주머니를 비치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라.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통로·비상문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 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마. 실험실습 시 안전관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수칙을 학생과 교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비치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b>2. 약품보관설비</b>			
	가. 유해·위험한 물질의 보관설비는 환기기능이 달린 구조로 하는 등 그 물질의 누출 등을 확인하기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나. 발화점이 낮은 물질(인·황 등)을 보관하는 설비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다. 화공약품 등 실험약품은 반드시 라벨을 붙이고, 실험 후 남은 시약(試藥) 등 폐시약은 지정된 용기에 분리하여 폐기물 전문가에 의해 배출될 때까지 별도 설비에 보관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 학교안전 자가점검표

※ 해당칸에 ✓를 표시

기본계획 각호	법제도	세부점검내용	계획수립 <sup>1)</sup>		전년도 실적 <sup>2)</sup>			추진실적 세부내용 <sup>3)</sup>	
			○	×	○	△	×		
1. 예방 정책의 방향 및 목표	기본계획, 지역계획, 학교계획	학교계획 수립 시 안전담당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였는가?	✓			✓		· 등하교시 교통안전지도  · 스쿨존 내 안전시설 점검을 통한 미흡시설 개선 추진	
		학교계획에서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교직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			✓			
		학교안전계획의 취지와 목표를 학교실정에 맞게 적절히 설정하였는가?							
		우리 학교는 학교와 주변지역의 위험성을 파악한 후, 이에 적합한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학교안전계획은 교직원들 간에 명확히 공유되었는가?							
		안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시간, 정보, 인원, 예산 등)과 수행 절차는 파악되었는가?							
2. 교육 활동 운영의 기본지침	학사일정별 학교안전	학사일정별 연간 안전관리계획 <별첨6>은 각 계절별 재난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 매월 안전 점검의 날에 훈련 중심의 대피훈련 실시  · 불시 훈련을 통한 인의식 고취 및 대응 능력 훈련	
		체험과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계획하였는가?							
		안전학습 관련 콘텐츠는 적절하고 풍부하게 준비하였는가?							
		시기, 활동, 행사별로 발생하기 쉬운 사고나 취약 학생 혹은 구역을 파악하여 예방조치를 할 계획을 세웠는가?							
	외부 체험 활동 안전	현장체험학습 계획 시 현장체험학습 지침 <별첨5>의 사항들을 교사들에게 공지하고, 계획에 게재하였는가?						· 교직원대상 심폐소생술 연수 실시	
학교주변 안전관리		학교안전의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자치, 소방서, 경찰서등) 간 협력 계획이 마련되었는가? 스쿨존 정비 방법은 마련되었는가?							
3. 학교 안전 교육	예방 및 학교 안전 교육	안전교육 연간 계획표에서 학교와 학교주변에 존재하는 위험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교육 계획에 포함시켰는가?						· 학교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안전 점검의 날' 운영(매월 4일)	
		안전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배려도 교육에 포함 시켰는가?							
		학생 참여형 안전교육을 준비했는가?							
		안전교육 교사연수 연간계획은 준비 되었는가?							
		안전사고 유형별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교과 연계 방법이 수립되었는가?							

기본계획 각호	법제도	세부점검내용	계획수립 <sup>1)</sup>		전년도 실적 <sup>2)</sup>			추진실적 세부내용 <sup>3)</sup>
			○	×	○	△	×	
	정기훈련	안전 전문가 초빙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학교구성원 모두 체험할 수 있는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훈련은 구체적 목표 및 평가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훈련은 체험형·토의형으로 수립하였는가?						
		학교에서 일어날 위험이 높은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재난대비훈련을 계획했는가?						
		심폐소생술의 이론과 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안전약자를 포함한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가?						
4. 학교 시설 안전점검·관리 및 안전조치	매월 안전 점검의 날 (제6조)	매월 안전점검의 날 <별첨10>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학교생활 속에 스며 드는 안전 문화 조성
	안전 관리 (제7조)실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별첨11>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계획·실시하였는가?						
	CCTV 관리	CCTV 관리 업무 분장은 명확한가?						
5. 학교 안전 문화 확산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기록하고 자료를 기록해서 공유하며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각종 안전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공유·적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자료는 정기적으로 갱신, 정비하여 손쉽게 찾아 쓸 수 있게 준비하였는가?						
		학교 구성원의 안전 관련 행동, 실천, 태도 등에 대해 인정과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학교 풍토가 조성되어 있는가?						
		학교안전은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확보될 수 있다는 가치관 확산을 위한 홍보·협업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안전관리활동에 따른 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방안을 마련했는가?						
		학교구성원이 학교안전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했을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6. 기타 사항		재난과 학교안전사고의 보고와 보상에 관한 절차와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마련해 놓았는가?						

주) 1. 계획 수립 : ○ - 반영, × - 미반영

2. 전년도 실적 : ○ - 잘 추진했음, △ - 보통이다. × - 보통이하로 추진

3. 기본계획 각 호별로 전년도 해당학교의 주요 학교안전 추진 실적을 기재